

2018년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

| 일시 : 2018년 12월 13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민연금 잠실사옥 7층 대회의실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후원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사회공공연구원

2018년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 순서

축사 (14:00~14:20)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용하 (국민연금 연구원장)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좌장	남찬섭 교수 (동아대학교)
발표 (14:20~15:40)	[발표]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 및 특성분석 한겨레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표] 기초연금의 정책효과성 분석 :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한 이중차이(Difference-in-Difference)분석을 중심으로 유승주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발표]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생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을 중심으로 박귀옥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발표] 기초연금 확대와 노인 노동 및 생활시간의 변화 이승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토론 (16:00~17:00)	정창률 교수 (단국대학교) 민기채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이은주 박사 (중앙대학교)

자료집 순서

1.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 및 특성분석 1
2. 기초연금의 정책효과성 분석: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한
이중차이(Difference-in-Difference)분석을 중심으로 35
3.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생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을 중심
으로 61
4. 기초연금 확대와 노인 노동 및 생활시간의 변화 87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 및 특성분석

한겨레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수로

I. 서론

우리나라는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중이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다(통계청, 2018: 2). 동시에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4배에 달하는 45.7%로 노인빈곤 1위의 불명예를 얻었다(OECD, 2017: 134-135). 이와 같은 한국사회에서 경제활동시기에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은퇴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생애주기 내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고자 지난 30년 동안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왔다.¹⁾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도 채 이전에 경기침체, 노동시장 유연화 그리고 인구고령화의 위협에 직면하여 적정노후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의 과제와 함께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하는 이중적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김연명, 2010: 156; 우해봉·한정림, 2015: 300). 이로 인해 정부는 국민연금이 도입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998년과 2007년에 재정안정화 조치를 단행했다.

비록 두 차례의 제도개혁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게 되었지만, 40년 가입기준 명목소득대체율 70%에서 40%라는 급진적인 인하로 공적연금의 주요 기능인 노인빈곤 방지와 소득평탄화 기능(income smoothing)을 사실상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보충과 노후소득 재원의 다각화를 통한 위험분산(risk pooling)을 위해 사적연금

1) 선진 복지국가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성립에는 1994년 World Bank의 Averting the Old Age Crisis와 2000년 국제노동기구(ILO)의 Social Security Pensions 두 보고서가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World Bank와 ILO는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각각 3층(pillar; 2000년 5층)과 4층(tier)구조의 연금제도 설계를 권고하였다.

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이후 개인연금제도 도입(1994), 퇴직연금제도 도입(2005),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도입(2008)과 이를 확대한 기초연금의 시행(2014)으로 한국은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외형적으로나마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학계와 정부의 주도적인 논의들은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제안하고 있다(김원식, 2011; 이용하, 2011; 오영수, 2012; 강성호·류건식, 2016; 오건호, 2016). 특히 정부는 2014년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현행대로 소득대체율의 단계적 인하를 유지하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내실화하는 안(‘나’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33-34). 이렇게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부와 학계가 다층연금체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나마 최근에 들어서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소수의 실증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유형화를 위한 측정변수의 타당성의 한계와 구체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를 포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사연금제도의 실질적 가입이력과 구조를 중심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유형을 도출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보고한 공·사연금체계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성별, 주된 경제활동상태)을 중심으로 재유형화를 실시한 후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외형적 구축을 넘어 국내 개인들의 실질적인 노후소득재원으로 자리 잡았는지 그 실효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우리나라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구조적으로는 공·사연금제도의 혼합을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0층의 기초연금, 1층의 국민연금제도 등 공적연금, 2층의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를 포함한 퇴직급여, 3층의 임의가입 개인연금으로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다.²⁾ 1980년대 이후 경기침체, 인구고령화의 위협, 노동시장의 유연화, 핵가족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기존의 퇴직금제도(1961)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충족하지 못하게는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세계적인 연금개혁과 쉼을 같이하여 우리나라 역시 1988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였고, 1994년에는 개인연금제도를, 2005년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로써 2005년 퇴직연금의 도입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를 완성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그 대상과 보장성 측면에서 더욱 확대되며 발전해오고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 및 현황

3층	개인연금		
2층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등) 160만 명	퇴직금 및 퇴직연금 850만 명	퇴직연금(IRP)
1층		국민연금 2,150만 명	
0층	기초연금 454만 명(소득하위 70% 노인 중 실제 수급률 66.1%)		
	공무원 등	민간 근로자	자영업자

출처 : 각 공단홈페이지, 보건복지부(2017) 감사원 자료 재구성

2) [그림 1]과 같이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는 엄밀하게 말하면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범위 내에서는 기초연금을 제외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다층연금체계 내 기여기반의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연금수급자격조건인 가입 및 납부이력을 파악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실효성을 타진해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비기여방식인 기초연금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국내 선행연구 고찰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실증하는 종단연구로는 전희정·임란(2011), 김경아·권혁창(2012), 한신실 외(2015), 한신실(2018)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들은 주로 공·사연금체계의 가입이력 및 구조를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다층연금체계 구축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희정·임란(2011: 120)과 김경아·권혁창(2012: 44)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고려하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개인들을 대상으로 각각 한국복지패널(2~4차)과 재정패널(2~4차) 3개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공·사연금 가입여부를 중심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덟 개의 유형 중 공·사연금의 다층보장을 구축하고 있는 개인들은 약4%~11%에 불과했다. 또한 한신실 외(2015)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8개년의 한국복지패널(1~8차 년도)을 사용하여 사건배열분석을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미준비형, 공적연금 중심형, 다층보장형의 총 세 개의 유형 중 안정적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유형에 속하는 개인들의 비중은 28%정도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선행연구 중에 공·사연금체계 구축을 가장 장기적으로 분석한 한신실(2018)의 연구는 2006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18세부터 49세까지의 총 2,553명을 대상으로 11개년의 한국복지패널(2~12차 년도)을 활용하여 집단중심다중추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미구축형, 개인연금중심형, 다층진입형, 국민·개인연금형, 국민·퇴직연금형, 다층안전형의 총 여섯 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 중 세 가지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의 유형으로 다층안전형에 속한 개인들의 비중은 20.7%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유형화(typology)라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내 개인들의 다양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의 양태를 분석하고 유형별 속성을 확인함으로써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첫째, 국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유형화에 사용한 선행연구들의 측정변수들이 제한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 기존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가능성을 특정 제도의 '가입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금은 가입기간 보다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가능성이 분석되어야 한다. 가령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은 되어 있으나 납부예외나 장기체납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공적연금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퇴직급여의 경우는 법정퇴직금 적용자의 상당수가 중간정산제도를 이용하여 연금수급권이 소멸되고 있고,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

도 가입자의 98%가 연금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노후소득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다(금융감독원, 2018: 11; 강성호, 2018: 15).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실제 공적연금의 보험료 납부여부와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일시금 수급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국민연금과 퇴직급여의 '명목상' 가입의 정도를 실증했을 뿐 실질적 다층연금체계의 구축을 실증하는 데는 실패했다. 따라서 가입여부와 더불어 실제 보험료 납부여부 및 중간정산과 일시금 수령여부 확인을 통한 공·사연금제도의 보유 유지여부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판단 요인이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측정의 엄밀성을 더하고자 개별연금제도의 가입여부 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 납부여부,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일시금 수령여부를 포함하여 유형화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선행연구들은 공·사연금제도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적인 특성에 따라 분석대상을 구분하기보다, 단순히 표본 전체를 대상으로 다층연금체계 구축을 유형화함으로써 모호한 결과를 보고했다. 장기간에 걸친 국내 전체 개인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궤적이 이질적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개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별로 또한 상이한 구축의 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가령, 선행연구들이 보고한 대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대상집단이라 할지라도, 여성 개인들 모두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취약 집단이라 이야기하긴 어렵다. 즉, 여성 개인들 내부에서도 또 다른 이질적인 공·사연금체계 구축의 궤적과 유형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개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개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공·사연금제도의 가입의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다층연금체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상집단(policy target group)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보고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유형을 예측하는 인구사회학적·경제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범주를 나누어 성별과 주된 경제활동상태를 기준으로 재유형화 하였다. 이를 통해 세부적인 카테고리 별 공·사연금체계 유형을 포착하고, 각 유형에 속한 개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대안을 설정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취약집단을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공·사연금제도의 외형적 정착 이후 지난 10여 년간에 걸친 국내 개인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실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1년간의 패널자료를 집단중심다중추세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공·사연금제도의 실질적 구축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대안적 방향성으로서 공·사연금체계의 적실성을 평가하고,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el Study, 이하 ‘복지패널’)』의 2차부터 12차 년도까지, 총 11개년에 걸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복지패널은 본고의 연구가설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들의 인구학적 특성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가입 및 납부여부, 퇴직급여의 적용여부 및 일시금 수령여부, 개인연금의 가입여부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실증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³⁾ 이에 본 연구는 가용한 자료의 기간을 고려하여 2차년도(2007년)부터 가장 최근 배포된 12차 년도(2017년)까지의 가구용 및 가구원용 데이터를 결합하여 이용하였다.⁴⁾

본 연구는 국내 개인들의 공·사연금체계 구축 유형들과 그 특성을 실증하고자 한다. 이에 2차년도 조사시점인 2006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하한연령인 만18세(1988년생)부터 12차(2017년)의 조사시점인 2016년을 기준으로 가입상한연령인 만59세(1957년생)까지인 개인들 중 분석에 필요한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한 자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이미 연금수급을 하고 있거나 연금수급하면서 가입하고 있는 자와 특수직역연금 대상자를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추출된 실제 분석대상은 총 3,329명이다.

2. 분석방법

국내 개인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양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퇴직급여, 개인연금의 가입이력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단순 개별 연금제도의 가입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김성숙, 2009: 34). 이에 본 연구는 개인들의 다층연금체계 구축 양태를 파악하고자 분석기간을 독립변수로, 국민·퇴직·개인연금의 구축여부를 종속변수

3) 그러나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의 표본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체소득계층을 포괄하여 분석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김경아, 2014).

4) 한국복지패널의 1차년도 자료 내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대한 가구용 설문문항이 2차 이후와 상이하기 때문에 분석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6년에 조사된 2차 년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로 하여 집단중심다중추세분석(Group-Based Multi-Trajector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집단중심다중추세분석은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준모수적(semi-parametric)방식의 분석방법으로서, 대규모 종단데이터의 표본들 내 유사한 변화 궤적의 하위집단을 포착하는데 유용한 방식이다(변금선, 2018). 집단중심다중추세분석은 유한혼합모형(finite mixture model)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는 모집단이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 유한개의 군집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Nagin, 2005: 25-26). 이는 모집단 내 정확한 유형의 수를 파악하기 보다는 상이한 궤적을 그리는 이질적인 개인들의 추세를 포착하고자 함이다.

기존의 집단중심추세분석이 하나의 독립변수와 하나의 종속변수의 궤적을 추정하는데 반해, 집단중심다중추세분석은 좀 더 유연하게 둘 이상의 종속변수를 포함하여 변화의 궤적과 그 유형을 분석한다(Nagin et al., 2016). 식(1)과 같이 개인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이력(추세)은 J 이며, 특정 시점(t)에 개인의 상태(i)로 정의된다. 각각의 시점에서 개인의 상태(Y_k^i)의 궤적은 K 로 나타내며, $P_k(Y_j^k | Time_{i,j}; \beta_j^k)$ 는 개별추세(j)와 잠재집단(β_j^k)에 속한 모집단의 분포를 의미한다. 집단중심다중추세분석은 식(2)와 같이 조건부 독립성(conditional independence)을 가정하여 T^k 는 독립변수들의 측정이 같은 시점에 동일한 횟수만큼 측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text{식(1)} \quad P_j(Y_i^1, Y_i^2, \dots, Y_i^k | Time_j) = \sum_{j=1}^J \pi_j \left[\prod_{k=1}^K P_k(Y_i^k | Time_{i,j}; \beta_j^k) \right]$$

$$\text{식(2)} \quad \text{with } P_k(Y_i^k | Time_{i,j}; \beta_j^k) = \prod_{t=1}^{T^k} p_k(y^k, j; \beta_j^k)$$

집단중심다중추세분석은 자료의 속성에 따라 포아송(poisson) 분포, 절단정규분포(censored normal), 이항분포(binary logit) 등을 따른다고 가정한다(Nagin, 2005). 본 연구의 경우 시간($t=2$ 부터 12)에 따른 개별 제도의 구축형태 변수는 0과1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가정한다. 이 때, 연구자는 시간 변수의 3차항(cubic)을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Nagin, 2005: 62), 이에 본 연구 역시 3차항을 가정하였다. 집단중심다중추세분석은 1개의 집단모형부터 집단의 수를 누적적으로 늘려가며 판별 기준인 BIC값과 모형간 BIC값의 차이, 각 집단의 비중을 고려하여 유한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로 최적의 모형을 판별하였다. 첫째, BIC값이 가장 큰 유한개의 유형화를 선택한다.⁵⁾ 둘째, 각 집단의 비중이 5%이상으로 군집화 되는

경우를 선택한다. 셋째, $\ln(\Delta BIC)$ 값이 3이상인 경우로 모형을 선택한다. 넷째, 위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유한개의 유형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 Jones et al.(2001)의 기준을 따라 $\ln(\Delta BIC)$ 값이 6을 초과하는 집단 중 궤적 분포를 고려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택한다.⁶⁾ 다섯째, Nagin(2005)의 기준을 따라 선택된 유형의 사후확률이 모든 집단에서 0.7이상인 경우를 선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최적 모형의 선정 기준은 단지 권장 사항일 뿐, Nagin(2005)은 결국 연구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IV. 분석결과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표 1]에는 조사당시 시점인 2006년을 기준으로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남성(45.30%)과 여성(54.70%)의 비율은 비교적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 별로 나누어본 결과 20대는 22.08%, 30대는 40.22%, 40대는 37.70%로 나타나 분석대상들은 20대, 40대, 30대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분석대상의 평균 연령은 37.12세(S.D. 8.05)이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미만인 개인들은 17.36%수준으로, 분석대상의 80%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의 유무의 경우 본 연구의 분석대상들의 약70%가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월 평균 가구 가치분 소득은 153만 4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주된 경제활동 상태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35.0%, 무급가족종사자는 4.54%, 자활·공공근로자는 0.63%, 임시·일용직14.87%, 고용주 및 자영자12.32%, 상용직 근로자는 32.65%로 나타났다.

5) Nagin(2005)은 BIC값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BIC가 최적 모형의 판별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연구목적에 맞게 유형의 수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이는 유형화 연구가 근본적으로 다양한 분석결과를 단순하게 종합하여 나타내고자 함이기 때문이다. 즉, 분석과 해석의 간결성(parsimony)을 위해 중요한 정보는 포함하면서 최소한의 수를 가진 모형을 채택하는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6) Jones et. al.(2001)은 모함적합도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복잡한 모형과 단순한 모형의 BIC 값의 차이의 자연로그 값이 0~2인 경우 단순한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순한 모형을 기각하는 것이 2~6미만인 경우 긍정적이며, 6~10인 경우 강하게 긍정적이며, 10을 초과하는 경우 매우 강한 긍정의 수준이다.

[표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N=3,329)

구분		빈도(명)	비중(%)
성별	남성	1508	45.30
	여성	1821	54.70
연령	20대	735	22.08
	30대	1339	40.22
	40대	1255	37.70
	평균(세)	37.12 (S.D. 8.05)	-
학력	고졸미만	578	17.36
	고졸	1460	43.86
	전문대재학이상	1291	38.78
배우자 유무	무배우자	1009	30.31
	유배우자	2320	69.69
월평균가구가처분소득	평균(만 원)	153.44(S.D. 94.01)	-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비경제활동	1165	35.0
	무급가족종사자	151	4.54
	자활·공공근로	21	0.63
	임시·일용직	495	14.87
	고용주·자영자	410	12.32
	상용직	1087	32.65

2. 국내 개인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화

분석결과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에 앞서 [표 2]는 분석대상 전체,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유형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분석대상 전체 개인들의 유형화는 총 6개로 분류되었다. 또한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에 따라 남녀 모두 6개, 경제적 특성으로 주된 경제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 5개, 비상용직 4개, 상용직 6개로 나누어졌다.

[표 2] 분류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화

	전체	성별		주된 경제활동상태		
	개인	남	여	비경활	비상용직	상용직
N	3,329	1,508	1,821	1,047	1,251	1,031
	6유형	6유형	6유형	5유형	4유형	6유형
1	미구축	미구축	미구축	미구축	미구축	미구축
2	국민연금 중심	국민연금 중심	국민연금 중심	불완전 국민연금	국민연금 중심	국민연금 중심
3	개인연금 중심	개인연금 중심	개인연금 중심	불완전 개인연금	불완전 개인연금	국민·퇴직 구축진행
4	국민·퇴직	국민·퇴직	국민·퇴직 구축진행	국민·퇴직 구축진행	국민·개인	국민·퇴직
5	국민·개인	국민·개인	국민·개인	국민·개인 구축진행		국민·개인
6	다층보장	다층보장	불완전 다층보장			다층보장

(1) 전체 개인

본 연구의 분석대상 총 3,329명의 11년간의 공·사연금제도의 가입이력을 바탕으로 실시한 유형화는 6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다음 [표 3]과 같이 8개의 집단까지 누적적으로 집단의 수를 늘려가도 BIC값이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ln(\Delta BIC)$ 값도 모두 3을 초과하였다. 동시에 각 집단의 비중 역시 5% 이상으로 나타나 Jones et. al.(2001)의 기준에 따라 $\ln(\Delta BIC)$ 값이 6을 초과하는 모형을 최적의 모형으로 선택하였다.⁷⁾ 6개로 분류된 모형의 사후확률은 모든 집단에서 0.94이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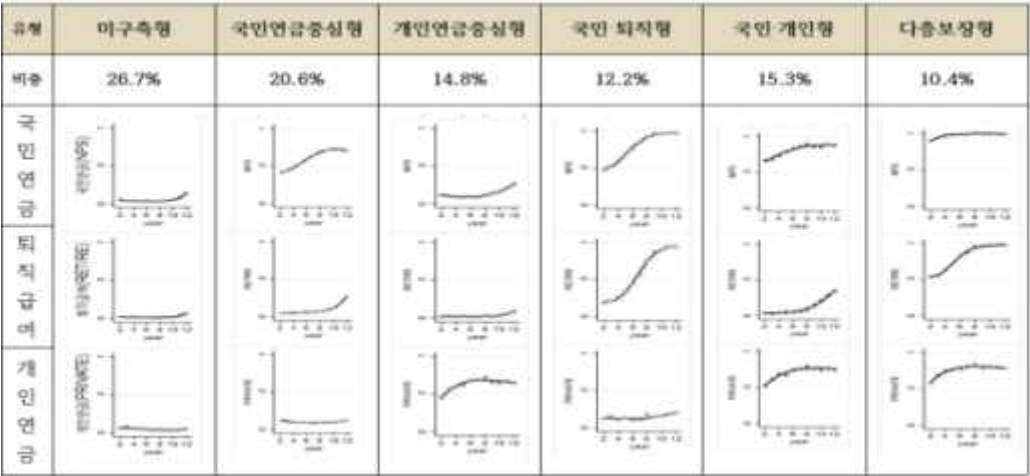
7) 홍백의·김혜연(2010) 역시 Jones et.al.(2001)의 모형적합도 기준을 차용하여 집단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BIC

로 나타나 Nagin(2005)이 제시한 사후확률의 기준인 0.7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6집단이 효율적으로 군집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추정된 개인들의 공·사연금체계 구축 이력의 궤적과 구조에 따른 유형화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표 3] 분석대상 전체 개인의 최적 유형화 추정

최적 유형수 판단			집단 구성비(%)							
	BIC	ln△BIC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6집단	7집단	8집단
...										
5	-44423.12	7.68	28.90	25.76	16.08	13.68	15.57	-	-	-
6	-43289.59	7.03	26.68	12.19	14.80	15.34	10.44	20.56	-	-
7	-42864.29	6.05	7.06	22.45	14.97	14.74	7.89	10.91	21.98	-
8	-42447.58	6.03	7.78	11.37	9.55	14.47	15.84	10.50	9.90	20.59

[그림 2] 국내 개인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구축 궤적(N=3,329)



[그림 2]에서처럼 국내 개인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유형은 미구축형(26.7%), 국민연금중심형(20.6%), 개인연금중심형(14.8%), 국민·퇴직형(12.2%), 국민·개인형(15.3%), 다층보장형(10.4%)로 나타났다. 먼저, ‘미구축형’은 6개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공·사연금제도 그 어느 것 하나 장기간 안정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개인들이 속하는 유형이다. 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 중 1/4이상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에서 배제되어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의 절대값이 감소하였을 때, ln(△BIC)의 값이 6을 초과하는 유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중심형’은 퇴직급여와 개인연금은 거의 가입을 유지하지 못하지만, 불안정적이라 할지라도 국민연금을 장기간 가입하는 개인들이 속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분석대상의 약20%는 국민연금을 유일한 노후소득보장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상당수의 개인들이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연금체제내 공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정책아젠다로 설정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개인연금중심형’은 국민연금과 퇴직급여의 안정적 구축 없이 오직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개인들의 유형이다. 궤적을 보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개인연금을 장기간 가입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개인연금은 해약률이 높고, 수익비 역시 공적연금에 비해 훨씬 낮아 이 유형에 속한 개인들의 경제적 노후 준비는 그다지 안정적이라 단정 짓기 어렵다. 한편 중층적 구축의 형태를 보이는 ‘국민·퇴직형’과 ‘국민·개인형’의 경우 세 가지의 공·사연금제도 중 두 가지를 안정적으로 보유한 개인들의 집단이다. 이 유형들은 상대적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로의 구축 이행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해봉·한정림(2015)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통합 소득대체율이 43~46%정도라는 점에서 중층적 노후소득보장체제를 보유한 개인들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노후소득을 마련하는 데는 턱 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⁸⁾ 마지막으로 ‘다층보장형’의 경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장기간 안정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층보장형에 속하는 개인들이 약10%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이 보고한 결과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층연금체제의 가입 유형을 분석한 나혜림·최현자(2014)와 한신실 외(2015)의 연구는 국내 개인들의 각각 약 22.1%, 27.7% 정도만이 공·사연금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비해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다층보장형’에 속한 개인들의 비중이 절반 이상 더 적은 이유는 본 연구는 국민연금과 퇴직급여의 단순 가입여부와 함께 ‘실질적 납부이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앞선 선행연구들은 공·사연금체제의 구축을 실증함에 있어 단순 가입여부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형식적 구축유형을 실증하는데 그쳐,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빗대어 본다면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다층보장형에 속한 개인들의 유형의 비중은 과대추정된 것일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볼 때, 국내 개인들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가 외형적으로 구축된 후 10여년 동안 각기 이질적인 양태로 공·사연금을 가입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석대상의 약 27%는 공·사연

8) OECD 회원국들의 공적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은 40.6%이며, 강제 사적연금을 포함할 경우 52.9%, 임의 사적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58.7%라고 보고 있다(OECD(2017)). OECD회원국들의 공·사연금 소득대체율과 국제기구들이 권고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이 25%수준임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급여와 개인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까지 보유한 개인들만이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제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약 35%는 단층적 구축을, 약 38%는 중·다층적으로 노후소득보장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도적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정착되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상당수 국내 개인들은 다층적으로 노후소득보장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방향성으로 공적연금의 강화 없이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이행을 설정하는 것은 “노인빈곤국”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는데 제한적인 효과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결과는 전체 개인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유형화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데는 유용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고, 실제 공·사연금체계 구축의 구체적인 사각지대를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공·사연금제도 가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성별과 주된 경제활동상태를 중심으로 분석대상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제 특성별 유형화를 실시하고자 한다.

(2)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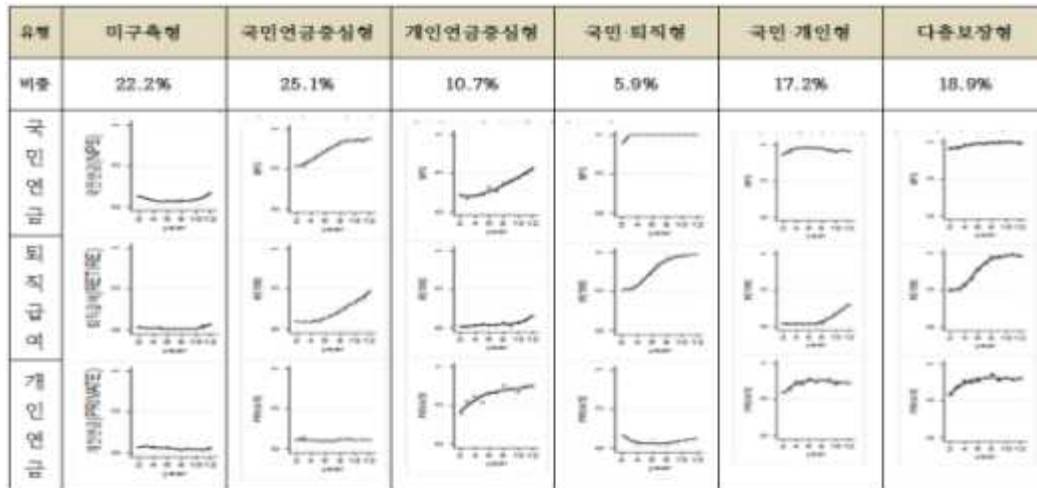
1) 남성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화

분석대상 중 남성인 1,508명을 대상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유형화 한 과정은 [표 4]와 같다. 남성 개인들을 7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경우 7집단의 비중이 5%이하로 감소하여 최적모형으로 채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6개의 집단의 모형을 최적모형으로 선택하였으며, 선택된 6집단의 모든 유형의 사후확률이 0.94이상으로 나타나 모형적합성의 타당기준을 충족했다. 이렇게 추정한 남성들의 공·사연금체계 구축 이력의 궤적과 구조에 따른 유형화의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표 4] 남성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화의 최적 모형 추정

최적 유형수 판단			집단 구성비(%)						
	BIC	ln△BIC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6집단	7집단
	...								
6	-20279.52	6.42	22.18	25.09	17.24	18.92	10.69	5.88	-
7	-19916.20	5.90	20.18	17.56	14.15	15.99	17.67	9.50	4.96

[그림 3] 남성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구축 궤적(N=1,508)



[그림 3]에서처럼 남성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유형은 미구축형(22.2%), 국민연금중심형(25.1%), 개인연금중심형(10.7%), 국민·퇴직형(5.9%), 국민·개인형(17.2%), 다층보장형(18.9%)로 나타났다. 먼저, 남성의 ‘미구축형’은 분석대상 전체의 ‘미구축형(26.9%)’과 궤적의 형태는 유사하나 그 비중이 약5%p정도 적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개인들을 대상으로 유형화 했을 때와 비교하여 남성 집단은 미구축형에 포함되는 비중이 더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연금중심형’은 6개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남성의 약 1/4은 공·사연금체계 중 공적연금에만 자신의 노후소득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단층형 유형인 ‘개인연금중심형’은 남성의 약15%가 소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유형에 속한 남성들은 분석의 최근시점에 들어 국민연금 역시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여전히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경제적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 ‘국민·퇴직형’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남성의 약6%만이 국민연금과 퇴직급여를 장기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인들의 ‘국민·퇴직형(12.2%)’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난 이유는 남성의 경우 ‘다층보장형’에 속하는 경우가 전체 개인의 유형 대비 더 많고,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혹은 일시금수령으로 안정적인 퇴직급여의 구축에 실패하여 ‘국민연금중심형’으로 소속된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약 17%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장기간 가입하는 ‘국민·개인형’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다층보장형(18.9%)’은 전체 개인들의 ‘다층보장형(10.4%)’에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여성에 비해 남성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남성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양태는 ‘미구축형’과 ‘다층보장형’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양극화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 개인의 유형화에 비해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제로 구축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의 약19%정도만이 ‘다층보장형’에 속한다는 결과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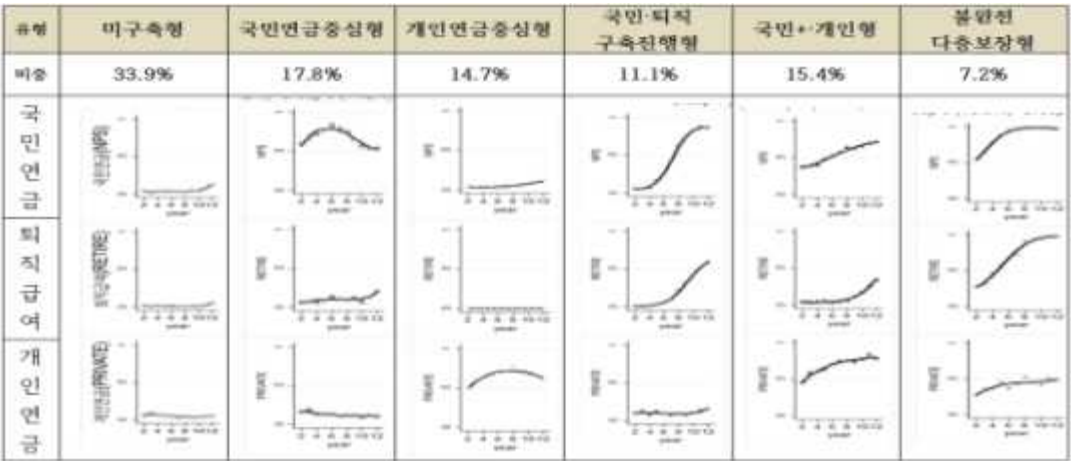
2) 여성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화

분석대상 중 1,82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유형화 한 과정은 [표 5]와 같다. 7개의 집단까지 누적적으로 집단의 수를 늘려 최적 모형을 추정해본 결과 7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경우 $\ln(\Delta BIC)$ 값이 2.98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3이하 이므로 Jones et al.(2001)이 제시한 모형적합도에 따라 원모형(H_0)을 기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6개의 집단의 모형을 최적모형으로 선택하였으며, 채택한 6집단의 모든 유형의 사후확률은 0.92이상으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이렇게 추정한 여성들의 공·사연금체계 구축 이력의 궤적과 구조에 따른 유형화의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표 5] 여성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화의 최적 모형 추정

최적 유형수 판단			집단 구성비(%)						
	BIC	$\ln\Delta BIC$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6집단	7집단
	...								
5	23258.44	6.59	33.17	24.30	18.77	13.48	10.27	-	-
6	-22921.61	5.82	17.77	33.93	11.10	15.38	7.17	14.65	-
7	-22901.85	2.98	6.16	30.05	19.01	14.49	11.19	7.11	11.99

[그림 4] 여성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구축 궤적(N=1,821)



[그림 4]와 같이 여성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은 미구축형(33.9%), 국민연금중심형(17.8%), 개인연금중심형(14.7%), 국민·퇴직 구축진행형(11.1%), 국민·개인형(15.4%), 불완전 다층보장형(7.2%)의 총 6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1/3 이상은 ‘미구축형’으로, 6개의 유형 중 가장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상당수가 공·사연금체계에서 배제되어 향후 심각한 노후빈곤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미구축형’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중심형’은 여성의 약18%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개인연금중심형’ 역시 여성들의 노후 보장체계 구축 양태의 단면을 잘 드러내는데, 여성의 약15%는 국민연금과 퇴직급여의 가입이력이 거의 전무하지만, 상대적으로 개인연금을 장기간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중 남성의 유형화에서는 도출되지 않았던 ‘국민·퇴직 구축진행형’ 이 포착되었다.⁹⁾ 이 유형은 조사기간 전기에는 국민연금과 퇴직급여를 거의 가입하지 않다가 후기로 갈수록 구축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국민·퇴직 구축진행형’은 11년간 안정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급여를 보유한 남성의 ‘국민·퇴직형’과는 다른 궤적을 그린다. 또한 여성의 ‘국민·개인형’의 경우 개인연금은 안정적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남성의 동일 유형보다는 국민연금을 더 약하게 구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약7%는 ‘불완전 다층보장형’에 속한다. 이는 남성에 비해 불안정한 구축양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다층연금체계의 취약집단으로 알려진 여성 내에서도 다층적 노후소득을 구축하는 개인들이 존재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잠재적 사각지대로 보고한 나혜림·최현자(2014), 한신실 외(2015), 한신실(2018)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해야할 필요를 나타낸다. 즉, 전체개인만을 대상으로 다층연금체계의 구축을 실증하는 것은 여성 집단 내 이질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양상을 간과하고, 모든 여성들을 공·사연금체계 내 취약집단으로 과도하게 일반화할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공·사연금체계 구축 양태는 표면적으로는 남성과 비슷한듯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가 노후소득보장의 성별격차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염두 하게한다. 즉, 노동시장 내 계층화(stratification) 현상이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모순적 상황일 수 있다. 결국 여성의 약 67%가 노후소득 메커니즘을 전혀 구축하지 못하거나 구축하더라도 단층형에 그쳐 다층연금체계의 정책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9) 연구자가 “구축 진행형”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조사기간 동안 모두 안정적으로 가입을 유지하기 보다는 최근조사시점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구축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 주된 경제활동 상태

1) 비경제활동인구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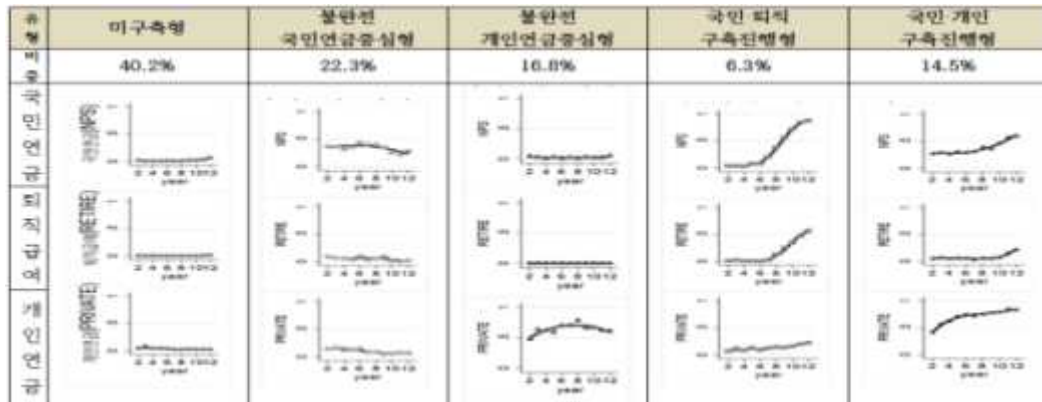
분석기간 동안 분석대상 개인들이 주된 경제활동상태로 응답한 결과의 최빈값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여부와 고용안정성을 고려하여 비경제활동인구, 비(非)상용직, 그리고 상용직으로 재분류하였다.¹⁰⁾ 이 중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1,047명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유형화 한 과정은 [표 6]과 같다. 최적모형 도출을 위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6개로 집단의 수를 증가시킬 경우 2집단의 비중이 4.31%로 모든 집단 비중이 5%를 초과하지 않아 원모형(H_0)을 기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5개 의 유형을 최적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이후 사후확률을 검증하였더니, 5개 유형의 모든 집단에서 0.93 이상으로 나타나 최소 기준인 0.7을 초과하므로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추정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가입이력과 구조에 따른 유형화의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표 6] 비경제활동인구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화의 최적 모형 추정

최적 유형수 판단			집단 구성비(%)					
	BIC	ln△BIC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6집단
	...							
4	-8901.66	5.46	20.32	48.02	13.87	17.79	-	-
5	-8794.98	4.67	22.26	40.16	6.26	16.82	14.49	-
6	-8698.32	4.57	44.02	4.31	14.59	7.73	17.17	12.18

10) 분석의 간결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를 '비경제활동인구'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비(非)상용직'은 자활 및 공공근로, 임시·일용직, 그리고 고용주와 자영자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된 경제활동상태를 상용직으로 응답한 개인들을 '상용직'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5] 비경제활동인구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구축 궤적(N=1,047)



[그림 5]와 같이 비경제활동인구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양태는 상이한 궤적을 그리는 5개의 유형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유형을 미구축형(40.2%), 불완전 국민연금중심형(22.3%), 불완전 개인연금중심형(16.8%), 국민·퇴직 구축진행형(6.3%), 국민·개인 구축진행형(14.5%)으로 명명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약 40%는 ‘미구축형’에 속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원리는 경제활동시기의 소득을 미래 시점으로 이전하는 것이기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집단은 필연적으로 공적 및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제외하고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할지라도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라든지 혹은 경제활동상태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한 개인연금을 통한 중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때, 비경제활동인구 내 ‘미구축형’의 압도적인 비율은 공·사연금제도 구축의 진입장벽이 높아서가 아니라 연금화할 충분한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단층 보장에 속하는 ‘불완전 국민연금중심형’과 ‘불완전 개인연금중심형’은 각각 약 22%, 약 17%의 비중으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유형은 분석기간 동안 우하향 곡선이나 역U자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안정적이지 못한 가입이력과 구조를 보이고 있다. ‘미구축형’ 보다는 경제적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사실상 임의가입자의 납입액이 직장가입자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고, 개인연금의 해약률과 낮은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노후에 적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5개의 유형 중 그나마 중층으로 공·사연금을 구축하고 있는 ‘국민·퇴직 구축진행형’과 ‘국민·개인 구축진행형’이 포착되었다.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조사시점의 후기로 갈수록 구축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장기간 안정적인 가입이력을 갖고 있지 않다.

요약하건대, 제도설계상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도 공·사연금체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지만 이들의 실제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소득수준이 낮은 개인들을 정책대상집단으로 하는 추가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 비상용직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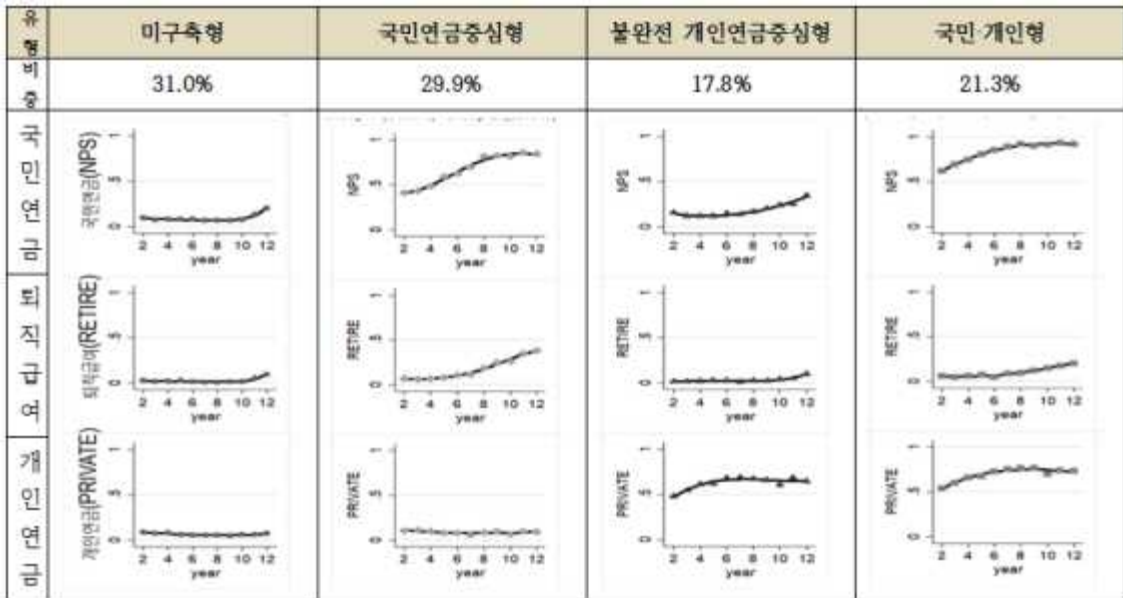
분석대상 중에서 자활 및 공공근로, 임시·일용직, 고용주 및 자영자에 속하는 개인들 즉, 상용직이 아닌 경제활동인구를 ‘비(非)상용직’으로 구분하였다. 비상용직에 해당하는 1,251명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화의 과정은 [표 7]과 같다. 최적모형 선택을 위한 추정 결과에 따르면, 8개의 집단까지 누적적으로 집단의 수를 늘려가도 BIC값이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ln(\Delta BIC)$ 값도 모두 3을 초과하였다. 동시에 각 집단의 비중 역시 5% 이상으로 나타나 Jones et al.(2001)의 기준에 따라 $\ln(\Delta BIC)$ 값이 6을 초과하는 4개 집단의 유형화를 최적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모형의 선택 이후 각 집단에 개인들이 다시 소속될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 4개의 모든 집단에서 사후확률이 0.94이상으로 나타나 적합한 유형화임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추정한 비상용직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가입이력과 구조에 따른 유형화의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표 7] 비상용직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화의 최적 모형 추정

최적 유형수 판단			집단 구성비(%)							
	BIC	$\ln \Delta BIC$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6집단	7집단	8집단
...										
3	-17464.41	7.1	41.4	30.9	27.7	-	-	-	-	-
4	-16745.71	6.6	31.0	29.9	21.3	17.8	-	-	-	-
5	-16413.92	5.8	30.2	16.9	16.5	19.8	16.7	-	-	-
...										
8	-15762.28	5.4	8.7	16.7	8.5	11.1	12.8	12.9	10.3	19.0

[그림 6] 비상용직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구축 궤적(N=1,251)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상용직 집단 내 이질적인 4개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 유형들의 명칭은 미구축형(31.0%), 국민연금중심형(29.9%), 불완전 개인연금중심형(17.8%), 국민·개인형(21.3%)이다. 먼저, 비상용직집단의 31%는 공·사연금에서 배제된 ‘미구축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경제활동인구라 할지라도 고용불안정성이 높고 근로소득수준이 낮은 임시·일용직이나 영세자영업자 등은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에 가입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구축형’ 만큼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중심형’에 속한 개인들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장기간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두 차례의 재정안정화 조치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유형에 속한 개인들이 노후에 적절한 수준으로 연금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비상용직의 ‘불완전 개인연금중심형’은 분석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개인연금의 가입이 유지되었으나 그 구축의 정도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나진 않았다. 마지막으로 ‘국민·개인형’의 경우 비상용직의 유형 중 유일한 중층적 보장형태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개인들이 소속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볼 때, 경제활동인구 내에서도 비상용직 집단의 경우 불안정한 공·사연금체계를 구축해온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비경제활동인구보다는 경제활동인구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전희정·임란(2011), 한신실 외(2015) 등

선행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라 할지라도 상용직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수가 공·사연금 구축을 통한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의 재원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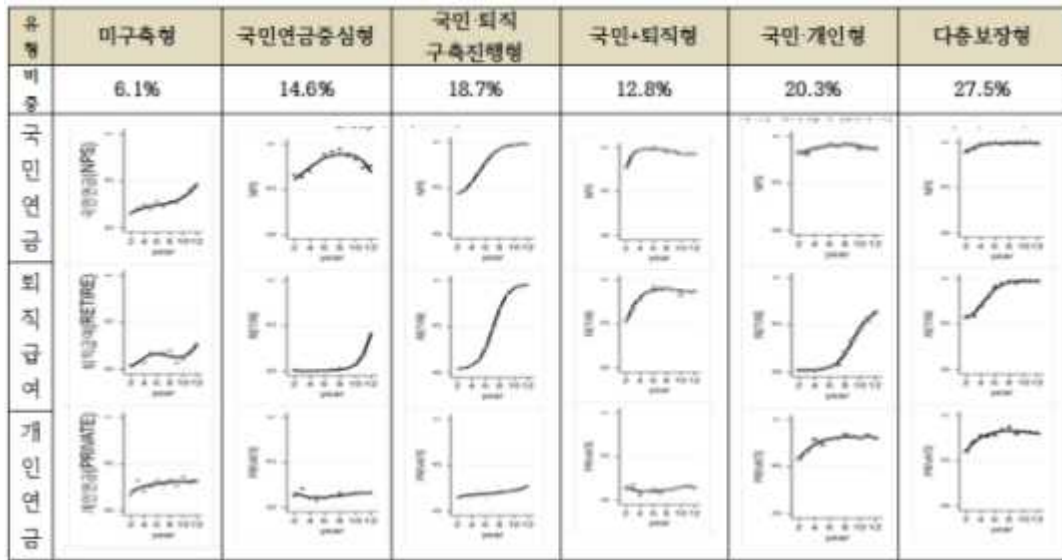
3) 상용직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

분석대상 중 상용직에 해당하는 1,031명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화의 과정은 [표 8]과 같다. 가장 적합한 공·사연금체계 유형화를 도출한 추정된 결과에 따르면, 6개의 집단으로 구분된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최적모형으로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7개의 집단까지 누적적으로 집단의 수를 늘릴 경우, BIC의 값이 -14592.45에서 -14605.00으로 감소하여 6개 집단의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모형 선택 이후 각 집단의 사후확률을 확인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적합모형의 기준인 0.7에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인 0.93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추정된 상용직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가입이력과 구조에 따른 유형화의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표 8] 상용직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화의 최적 모형 추정

최적 유형수 판단			집단 구성비(%)						
	BIC	ln△BIC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6집단	7집단
...									
5	-14781.37	5.83	12.56	20.86	27.48	18.83	20.28	-	-
6	-14592.45	5.24	14.64	12.76	20.26	27.55	6.09	18.70	-
7	-14605.00	-	14.57	12.70	20.24	27.51	18.56	0.58	5.84

[그림 7] 상용직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구축 궤적(N=1031)



[그림 7]과 같이 상용직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은 비경제활동인구나 비상용직 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안정적인 구축 궤적을 그리는 6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상용직의 ‘미구축형(6.1%)’의 궤적은 이전에 나타난 ‘미구축형’과는 조금 상이한 형태이다. 상용직의 ‘미구축형’은 완전한 미가입을 유지하기 보다는 그 정도가 미약하긴 하나 부분적으로 가입이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유일한 단층형 보장형태인 ‘국민연금중심형(14.6%)’은 역U자 형태를 그리고 있긴 하지만 분석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중층적 노후소득보장의 유형으로 ‘국민·퇴직 구축진행형(18.7%)’과 ‘국민·퇴직형(12.8%)’은 국민연금과 퇴직급여를 중심으로 경제적 노후를 대비하고 있음은 동일하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조사시점 후기로 갈수록 구축이 강화되고, 후자의 경우는 조사시점 내내 안정적인 가입을 유지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중층적 구축유형으로 상용직의 약 1/5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장기간 안정적 가입이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개인형(20.3%)’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다층보장형(27.5%)’의 경우 본 연구에서 실시한 모든 유형화의 ‘다층보장형’ 중에서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고, 가장 안정적인 궤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지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특히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상대적으로 부유하거나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계층 일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는 이용하(2014: 232-236)의 주장과 일맥상통 한다.

결론적으로, 공·사연금체계의 제도적 완성 이후 지난 10여 년 간 가장 성공적으로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한 인구집단은 상용직 근로자이다. 특히, 비상용직 근로자와 비교해보아도 같은 경제활동인구 집단 내에서도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에 따라 공·사연금의 구축정도와 제도의 실효성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재원의 다각화를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라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본적 목표와 실제 구축 양태는 서로 다른 경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고용유연화가 급속도로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공적연금의 강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이행은 결국 상용직 근로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3. 분석대상 전체 개인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유형별 특성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전체 분석대상과 개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별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는 이유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잠재적 사각지대에 속한 개인들의 특징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각 유형별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월 평균 가구 가치분소득, 주된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았다. 모든 분석은 첫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유형화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earson Chi-square와 Likelihood-Ratio Chi-square 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1) 분석대상 전체 개인들의 유형별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3,329명의 개인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유형화 한 결과 미구축형, 국민연금중심형, 개인연금중심형, 국민·퇴직형, 국민·개인형, 다층보장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유형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성별에 따른 유형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총 6개의 유형 중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미구축형(68.02%), 국민연금중심형(54.24%), 개인연금중심형(76.97%)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나는 유형은 국민퇴직형(52.93%), 국민개인형(62.5%), 다층보장형(77.81%)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성별에 따른 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는 중층 혹은 다층형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

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의 경우, 각 유형별 평균연령의 차이가 크진 않았지만 국민·퇴직형, 다층보장형, 개인연금중심형, 국민연금중심형, 미구축형, 국민·개인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자면 20대는 모든 유형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고, 30대와 40대의 비중이 유형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30대와 40대의 분포를 기준으로 40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미구축형(43.08%), 국민연금중심형(42.84%), 국민·개인형(41.87%)이며 30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개인연금중심형(45.05%), 국민·퇴직형(40.73%), 다층보장형(53.89%)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층보장형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의 비중이 높다고 보고한 전희정·임란(2011)과 한신실 외(2015)와 일치한다.

또한 학력의 경우 고졸미만은 모든 유형에서 가장 적은 비중으로 나타났기에 고졸과 전문대재학 이상을 중심으로 유형별 교육수준 특성을 비교해보았다. 비교해본 결과 국민·퇴직형, 국민·개인형, 다층보장형과 같은 중층 혹은 다층적 유형에서는 전문대재학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개인연금중심형(79.8%), 국민·개인형(77.18%), 다층보장형(72.91%) 등은 나머지 유형에 비해 유배우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다층적노후소득보장을 구축하거나 공적연금 위주 보다는 사적연금 중심의 단층 혹은 중층형 구축에 그친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특성으로서 유형별 월 평균 가구 가처분소득의 금액을 분석한 결과 평균 소득액은 미구축형(116만8천원, S.D.73.9), 국민연금중심형(138만8천원, S.D.74.5), 국민·퇴직형(144만8천원, S.D.92.1), 개인연금중심형(173만6천원, S.D.107.4), 국민·개인형(185만5천원, S.D.105.9), 다층보장형(211만1천원, S.D.88.8) 순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개인연금중심형’이 단층형 보장제도로 구축하고 있는 개인들이 속하는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중층형인 국민·퇴직형 보다도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히 소득수준이 높다고 해서 중층 혹은 다층형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개인들이 공적연금 이외에 추가적인 노후소득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제로 개인연금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유형별 차이 중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이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상용직을 중심으로 비교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미구축형(61.3%)과 개인연금중심형(57.58%)이다. 이는 곧 비경제활동인구들은 공·사연금제도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거나, 사적연금을 통해서만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특히, 전술한바와 같이 개인연금중심형은 여

성의 비율이 높고, 유배우자의 경우가 많으며,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많다. 이러한 유형의 인구집단의 전형적인 예는 전업주부들이라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의 전업주부들은 개인연금만을 통해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해볼만 하다. 반면에 국민·퇴직형, 국민·개인형, 다층보장형은 상용직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 중에서 ‘다층보장형’의 경우에는 상용직이 약 85%로 나타났다. 즉, 상용직은 비경제활동인구나 비상용직에 비해 안정적인 고용을 바탕으로 중층 혹은 다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분석대상 전체 개인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별 특성비교

구분		가구축형	국민연금 중심형	개인연금 중심형	국민·퇴직형	국민·개인형	다층보장형	Pearson chi2	LR chi2
N	3329	26.7%	20.6%	14.8%	12.2%	15.3%	10.4%		
성별	남성	279(31.38)	313(45.76)	114(23.03)	217(52.93)	315(62.5)	270(77.81)	386.4147***	400.6293***
	여성	610(68.62)	371(54.24)	381(76.97)	193(47.07)	189(37.5)	77(22.19)		
연령	20대	178(20.02)	163(23.83)	110(22.22)	122(29.76)	87(17.26)	75(21.61)	89.0386***	89.7672***
	30대	328(36.9)	228(33.33)	223(45.05)	167(40.73)	206(40.87)	187(53.89)		
	40대	383(43.08)	293(42.84)	162(32.73)	121(29.51)	211(41.87)	85(24.5)		
	평균 (세) (S.D.)	37.92576 (8.243418)	37.59064 (8.762306)	36.59798 (7.470996)	35.08537 (8.407706)	38.04365 (7.381003)	36.00576 (6.748151)		
학력	고졸 이하	248(27.9)	139(20.32)	70(14.14)	55(13.41)	52(10.32)	14(4.03)	238.5509***	244.8868***
	고졸	410(46.12)	311(45.47)	229(46.26)	171(41.71)	229(45.44)	110(31.7)		
	전문대재학 이상	231(25.98)	234(34.21)	196(39.6)	184(44.88)	223(44.25)	223(64.27)		
배우자 유무	무	307(34.53)	236(34.5)	100(20.2)	157(38.29)	115(22.82)	94(27.09)	64.6102***	66.4719***
	유	582(65.47)	448(65.5)	395(79.8)	253(61.71)	389(77.18)	253(72.91)		
월 평균 가구 가처분 소득	평균 (만원) (S.D.)	116.8699 (73.88211)	138.7632 (74.5417)	173.5523 (107.3929)	144.8249 (92.09274)	185.5136 (105.8947)	211.0503 (88.81449)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비경제활동	545(61.3)	234(34.21)	285(57.58)	135(32.93)	93(18.45)	24(6.92)	949.1186***	994.7992***
	비상용직	274(30.82)	247(36.11)	123(24.85)	77(18.78)	176(34.92)	29(8.36)		
	상용직	70(7.87)	203(29.68)	87(17.58)	198(48.29)	235(46.63)	294(84.73)		

주: *p<.05, **p<.01, ***p<.001

(2) 남성과 여성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유형별 특성 분석

본 연구의 분석대상 중 1,508명의 남성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유형은 미구축형, 국민연금중심형, 개인연금중심형, 국민·퇴직형, 국민·개인형, 다층보장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1,821명의 여성의 공·사연금체계 구축유형은 미구축형, 국민연금중심형, 개인연금중심형, 국민·퇴직 구축진행형, 국민·개인형, 불완전 다층보장형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유형별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모든 유형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평균연령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시장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진입하는 시기가 더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30대와 40대의 비중을 중심으로, 남성은 미구축형과 다층보장형이 30대가 40대에 비해 많고 나머지 유형은 4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미구축형과 국민연금중심형을 제외하고는 3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남녀 간 유형별 연령대의 차이가 나타난다. 교육수준의 경우 남성의 국민·개인형, 다층보장형 그리고 여성의 불완전 다층보장형으로 알 수 있듯 중층 혹은 다층형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유무의 경우 남녀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유배우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이 국민·개인형(82.82%)인데 여성의 경우에는 개인연금중심형(86.62%)로 나타났다. 또한 유배우자의 비중이 가장 적은 유형이 남성은 미구축형(49.11%), 여성은 불완전 다층보장형(56.5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남성은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미구축형보다는 중층 혹은 다층적 연금제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여성은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미구축형이나 사적연금 중심의 단층형 보장에 머무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국민연금과 퇴직급여의 제도설계 당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전제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특성으로서 유형별 월 평균 가구 가처분소득의 금액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미구축형 < 국민연금중심형 < 개인연금중심형 < 국민·퇴직형 < 국민·개인형 < 다층보장형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미구축형 < 국민·퇴직 구축진행형 < 국민연금중심형 < 개인연금중심형 < 불완전 다층보장형 < 국민·개인형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모두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미구축형 보다는 국민·개인형이나 (불완전)다층보장형에 속하였다. 또한 주된경제활동상태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없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불완전 다층보장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가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격차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표 10] 남성과 여성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별 특성비교

		남성(N=1,508)						여성(N=1,821)					
유형		마구축	국민연금 중심	개인연금 중심	국민· 퇴직	국민· 개인	다층 보장	마구축	국민연금 중심	개인연금 중심	국민·퇴직 구축진행	국민· 개인	불완전 다층보장
연령	20대	20.54	18.93	24.84	16.3	13.36	18.09	20.13	26.27	21.19	31.71	26.81	37.98
	30대	37.5	38.13	40.99	39.13	40.84	57.8	36.74	32.28	43.12	42.44	41.3	37.98
	40대	41.96	42.93	34.16	44.57	45.8	24.11	43.13	41.46	35.69	25.85	31.88	24.03
	평균(세) (S.D.)	37.6 (8.13)	38.3 (7.96)	36.6 (7.82)	38.6 (7.10)	38.8 (6.72)	36.4 (6.22)	37.9 (8.37)	37.1 (9.06)	37.0 (7.40)	34.0 (8.82)	36.1 (8.06)	33.8 (8.45)
		Pearson chi2(10)= 51.0714*** LR chi2(10)= 51.9879***						Pearson chi2(10)= 50.1097*** LR chi2(10) = 50.3313***					
학력	고졸이하	26.19	18.67	12.42	10.87	8.78	3.55	27.48	20.25	16.36	16.1	12.32	7.75
	고졸	45.54	44.27	44.1	46.74	42.75	32.27	47.6	43.35	46.84	46.83	44.57	34.11
	전문대 재학이상	28.27	37.07	43.48	42.39	48.47	64.18	24.92	36.39	36.8	37.07	43.12	58.14
		Pearson chi2(10)=125.5363*** LR chi2(10)=130.3235***						Pearson chi2(10)= 87.7368*** LR chi2(10) = 88.4880***					
배우자	무	50.89	36.53	37.27	22.83	17.18	23.05	25.88	35.76	13.38	33.66	26.81	43.41
	유	49.11	63.47	62.73	77.17	82.82	76.95	74.12	64.24	86.62	66.34	73.19	56.59
		Pearson chi2(5)= 98.5630*** LR chi2(5) = 100.2945***						Pearson chi2(5)= 57.9819*** LR chi2(5) = 60.6649***					
월평균가구소득 (만원) (S.D.)		102.42 (60.79)	141.54 (91.64)	147.24 (74.74)	152.11 (78.56)	189.02 (104.7)	207.48 (88.56)	125.92 (78.28)	149.65 (104.1)	179.96 (103.7)	136.60 (74.22)	186.89 (102.7)	182.18 (94.23)
주된 경제 활동 상태	비경활	41.07	17.6	22.36	5.43	6.49	5.67	69.49	46.52	71	58.54	42.03	22.48
	비상용직	48.81	40.27	45.96	10.87	38.17	6.38	22.68	29.75	16.36	20	23.19	18.6
	상용직	10.12	42.13	31.68	83.7	55.34	87.94	7.83	23.73	12.64	21.46	34.78	58.91
		Pearson chi2(10)= 495.956*** LR chi2(10) =548.548***						Pearson chi2(10)= 262.638*** LR chi2(10)= 250.832***					

주: *p<.05, **p<.01, ***p<.001

(3) 비경제활동인구, 비상용직, 상용직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유형별 특성 분석

전술한대로 주된 경제활동상태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유형은 다음과 같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미구축형, 불완전 국민연금중심형, 불완전 개인연금중심형, 국민·퇴직 구축진행형으로 총 5개이며, 비상용직은 미구축형, 국민연금중심형, 불완전 개인연금중심형, 국민·개인형의 총 4개 유형이다. 또한 상용직은 미구축형, 국민연금중심형, 국민·퇴직 구축진행형, 국민·퇴직형, 국민·개인형, 다층보장형의 총 6개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주된 경제활동상태별 공·사연금체계 구축 유형의 일반적 특성은 [표 11]과 같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집단의 모든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비상용직과 상용직의 유형을 중심으로 볼 때, 미구축형은 남성과 여성이 비교적 동등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층 혹은 다층형을 중심으로 본다면 비상용직의 국민·개인형(66.92%)과 상용직의 국민·퇴직형(64.57%), 국민·개인형(69.12%), 그리고 다층보장형(79.25%)은 남성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경제활동인구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은 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집단은 미구축형이나 단층적 공적연금중심의 구축유형이 4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중층적 구축유형은 30대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비상용직은 불완전 개인연금중심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유형에서 40대의 비중이 높았고, 상용직의 경우에는 모든 유형에서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주된 경제활동상태별 연령에 따른 유형 간 차이는 비일관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생애주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가령, 노동시장에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30~40대는 보다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일 가능성이 높고, 20대는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으로 노동시장 외부자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40~50대는 안정적인 상용직에서 불안정한 일자리로의 이행이나 은퇴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비상용직은 모든 유형에서 고졸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비경제활동인구와 상용직은 국민·퇴직형이나 (불완전)국민·개인형, 다층보장형의 경우에 전문대재학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유무와 관련해서는 유배우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불완전 개인연금중심형(89.24%), 비상용직의 국민·개인형(83.65%), 상용직의 다층보장형(73.47%)이 꼽혔다. 이러한 결과로 짐작하건대 비경제활동인구의 개인연금중심형에

속한 여성들은 주로 전업주부일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배우자는 주로 상용직의 다층보장형을 구축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가구 내 소득이전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비경제활동인구 내 여성집단을 잠재적 노인빈곤층으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배우자의 유무와 배우자의 다층연금체계 구축 유형을 함께 고려해야만 비로소 보다 명확한 사각지대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가구 가처분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비상용직, 그리고 상용직 모두 미구축형의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불완전)국민·개인형이나 다층보장형이 경우에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어떤 경제활동상태이든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유형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 주된 경제활동상태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 특성비교

		비경제활동(N=955)					비상용직(N=1251)				상용직(N=1031)					
유형		마구축	불안전 국민연금 중심	불안전 개인연금 중심	국민 퇴직	불안전 국민개인	마구축	국민연금 중심	불안전 개인연금 중심	국민 개인	마구축	국민연금 중심	국민퇴직 구축전형	국민 퇴직	국민 개인	다층노후
성별	남성	21.48	17.33	3.16	27.87	9.09	48.33	51.2	42.41	66.92	49.21	53.59	57.89	64.57	69.12	79.25
	여성	78.52	82.67	96.84	72.13	90.91	51.67	48.8	57.59	33.08	50.79	46.41	42.11	35.43	30.88	20.75
		Pearsonchi2(4)= 39.588*** IR chi2(4) = 46.9284***					Pearsonchi2(3)= 33.902*** IRchi2(3)= 34.472***				Pearsonchi2(5)= 47.8746*** IR chi2(5) = 48.9074***					
연령	20대	21.23	30.69	22.78	42.62	32.17	15.94	10.67	13.84	7.6	34.92	33.33	34.21	33.07	23.04	21.77
	30대	38.11	32.67	44.94	44.26	43.36	34.7	33.07	43.75	37.64	36.51	37.91	42.63	38.58	47.55	56.12
	40대	40.66	36.63	32.28	13.11	24.48	49.36	56.27	42.41	54.75	28.57	28.76	23.16	28.35	29.41	22.11
	평균 (SD)	37.7 (8.28)	35.9 (9.21)	36.5 (7.45)	31.3 (7.98)	35.1 (7.78)	39.1 (7.83)	40.5 (7.49)	38.3 (7.25)	40.5 (6.35)	34.9 (8.16)	35.1 (8.44)	34.0 (8.26)	34.9 (7.75)	35.9 (7.23)	35.7 (6.53)
		Pearson chi2(8)= 35.8084*** IR chi2(8) = 37.7127***					Pearson chi2(6)= 21.2272*** IRchi2(6)= 21.5792***				Pearsonchi2(10)= 28.3568*** IR chi2(10) = 28.4065***					
학력	고졸이하	32.99	18.81	16.46	14.75	9.09	26.48	26.13	15.63	14.07	14.29	9.15	11.58	8.66	4.9	3.4
	고졸	41.94	49.5	44.3	32.79	43.36	50.13	45.07	50	49.81	46.03	48.37	38.95	36.22	42.16	29.93
	전문대 이상	25.06	31.68	39.24	52.46	47.55	23.39	28.8	34.38	36.12	39.68	42.48	49.47	55.12	52.94	66.67
		Pearsonchi2(8)= 64.1389*** IR chi2(8) = 64.8296***					Pearson chi2(6)=30.1929*** IR chi2(6)=31.3430***				Pearson chi2(10) = 44.956*** IR chi2(10) = 44.7729***					
배우자	무	33.5	35.15	10.76	37.7	23.08	36.5	26.4	23.21	16.35	49.21	37.25	43.16	40.16	26.96	26.53
	유	66.5	64.85	89.24	62.3	76.92	63.5	73.6	76.79	83.65	50.79	62.75	56.84	59.84	73.04	73.47
		Pearson chi2(4)= 37.9130*** IR chi2(4) = 42.7511***					Pearson chi2(3)=34.7611*** IRchi2(3)= 35.2647***				Pearson chi2(5)= 28.0905*** IR chi2(5) = 28.0605***					
월 평균 가구 가처분 소득 (만원) (SD)		114.8 (80.47)	137.18 (104.78)	178.64 (106.53)	139.78 (81.0)	207.15 (116.35)	116.01 (64.62)	126.75 (71.68)	155.75 (84.38)	172.02 (103.79)	147.36 (76.67)	160.09 (90.73)	152.74 (80.86)	148.53 (68.77)	203.78 (94.85)	211.35 (87.77)

주: *p<.05, **p<.01, ***p<.001

V. 결론

본 연구는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향으로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로의 이행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외형적 구축 이후로 국내 개인들이 제도적 정착과 함께 실질적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사연금체계의 구축 유형과 특성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여 년간의 국내 개인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집단중심다중추세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대상 전체 개인들은 미구축형(26.7%), 국민연금중심형(20.6%), 개인연금중심형(14.8%), 국민·퇴직형(12.2%), 국민·개인형(15.3%), 다층보장형(10.4%)로 각기 이질적인 궤적을 그리는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분석결과 중 특히 세 가지 제도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다층보장형’의 경우 선행연구들이 개인들의 약20%이상이 소속된다고 보고했던바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약 10%의 개인만이 안정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분석에 있어 단순 가입(적용)여부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명목상’ 공·사연금의 가입이력과 구조를 밝혔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제도들의 단순 가입여부가 아닌 ‘실질적’ 기여이력을 중심으로 유형화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실증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전체 개인들의 다층연금체계 구축의 유형화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에서 공·사연금체계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보고된 성별과 주된 경제활동상태를 중심으로 재유형화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6개의 집단으로 표면적으로는 비슷하게 군집되었지만, 사실상 각 유형의 궤적을 살펴본 결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있어 남녀 간 질적 차이를 포착할 수 있었다. 가령, 남성의 다층보장형에 속한 개인들의 비중은 여성의 (불완전)다층보장형의 속한 개인들의 비중의 약 2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다층연금체계 구축의 궤적은 여성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가 노후소득보장 구축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보장제도가 계층화효과를 약화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주된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 비상용직, 상용직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경제활동인구집단은 5개로, 비상용직 집단은 4개로 군집되었는데 이들의 경우에도 불완전하긴 하나 중층형의 공·사연금체계를

구축한 개인들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상용직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턱 없이 불안정한 구축양상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6개의 군집으로 분류된 상용직은 28%에 가까운 개인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다층연금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유형들 역시 비경제활동인구나 비상용직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구축 양태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적연금의 강화 없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로 이행한다면 공·사연금의 안정적 구축은 남성이나 상용직과 같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전체 개인, 성별, 주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여정보다는 남성, 40대 보다는 30대, 고학력자, 유배우자, 월 평균 가구 가처분소득이 높을수록, 상용직인 경우에 중층 혹은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개인연금중심형’에 소속된 개인들의 특성분석이었는데, 이들은 주로 여성, 유배우자, 비경제활동인구, 상위소득자라는 공통된 특징을 보였다. 이 결과로 짐작하건대, 배우자가 있는 상위소득계층의 전업주부와 같은 인구집단은 임의가입을 통한 공적연금에 가입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노후대비를 사적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상위소득계층이라 할지라도 사적연금의 수익성과 해약률을 고려한다면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도 함께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 즉, 상위소득자의 공적연금 가입 유인을 강화해야할 정책적 필요성을 의미한다.

종합하여 보자면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외형적으로 구축된 지 10여년지 지났지만, 사실상 개인들의 다층연금체계의 구축 정도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현재까지는 국내 다층연금체계가 제도적 정착 수준에 머물렀을 뿐, 내실화를 갖춘 국민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재원으로서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정부에서 강조했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과 제도 발전위원회가 내놓은 ‘나’안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반쪽짜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강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로의 이행은 높은 수준의 보편적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보다는 사적연금 위주의 영미식 복지국가로의 노선을 택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현재와 같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실질적 구축 정도와 개별 제도 간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만으로는 한국 복지국가는 잔여적인 경로를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향후 한국 복지국가 전략을 고려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설계를 논해야 하며, 비록 지난한 과정일지라도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의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호, 류건식. (2016). 공·사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 KIRI weekly (주간포커스), 395, 1-12.
- 강성호. (2018). 공사연금 역할 분담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보험연구원/한국연금학회 공동심포지엄.
- 금융감독원. (2018). 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연금금융실.
- 김경아, 권혁창. (2012). 다층노후소득보장연구.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 김성숙. (2009). 50대 비은퇴자의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가입 구조와 특성. 한국사회과학연구, 28(1), 27-50.
- 김연명. (2010).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의 재검토. 사회복지정책, 37(4), 155-179.
- 김원식. (2011). 고령화시대와 연금: 미래를 위한 디자인. 연금연구, 1(1), 1-35.
- 나혜림, 최현자. (2014). 개별연금 가입여부 및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결정요인 분석. Financial Planning Review, 7(4), 43-72.
- 변금선. (2018).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 변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17).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감사원 자료. 감사원. 1-101.
- _____. (2018).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 오건호. (2016). 기초연금 중심 노후소득보장론.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2016(1), 13-34.
- 오영수. (2012).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연금연구, 2(2), 1-27.
- 우해봉, 한정림. (2015).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1), 299-329.
- 이용하. (2011). 다층연금체계 구축: 내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연금연구, 1(2), 1-27.
- 전희정, 임란. (2011). 다층연금체계의 가입구조와 특성 분석. 보험학회지, 90, 107-135.
- 통계청. (2018a). 2017 상반기 기준 퇴직연금통계. 보도자료, 1-31.
- 한신실, 주수정, 신성희. (2015).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양태의 경험적 검토. 한국사회복지학, 67(1), 215-237.
- 한신실. (2018).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실태 추세분석. 한국연금학회2018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홍백의, 김혜연. (2010). 중·고령자의 고용형태별 퇴직과정 유형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7(1): 291-319.
- Jones, B., Nagin, D., & Roeder., 2001, A SAS procedure based on mi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3), pp.374-393.
- Nagin, D.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Nagin, D., Jones, B., Passos, V. & Tremblay, R. (2016).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ing. *Statistical Methods in Medical Research*, 1-9.
- OECD. (2017). *Pensions at a Glance 2017 -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Paris.

기초연금의 정책효과성 분석 :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한 이중차이(Difference-in-Difference)분석을 중심으로

유승주(연세대학교 석사과정)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0차, 제12차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후 노령기에 접어든 가구들의 기초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지표(가처분 소득, 소비지출)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해 동질성(similarity)을 확보한 처리집단(기초연금 수급)과 통제집단(기초연금 비수급)을 구성한 후, 수급 시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는 이중차이(difference-in-difference)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초연금 수급 이전 다양한 가구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지표들의 변화량을 분석함으로써, 기초연금의 순수한 정책효과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분석결과, 단순이중차이 모형과 이중차이회귀분석에서 기초연금은 통제집단과 처리집단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지출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국 기초연금이 본래의 정책취지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의 정책효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기초연금, 성향점수 매칭, 이중차이, 정책효과]

I. 서론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12.6% 대비 약 4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OECD, 2015). 한국의 노인 빈곤문제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가족형태의 변화 및 고령화가 도래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결국 한국의 노인빈곤문제는 한 개인, 가족을 넘어 사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노인빈곤문제는 전혀 해결의 양상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노인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넓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수준도 낮아 저소득 노인 인구층의 빈곤을 해소해 주기에는 역부족하다(유미향, 2015).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에 대한 장기전망은 2015년 35.7%, 2020년 41.0%, 2030년 50.2%에 머물고 있어 보편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써 한계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작한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소득을 대체하기에는 급여액이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의 노인세대들은 우리사회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장미혜, 2013).

이에 정부는 2014년 7월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보완·발전시킨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의 한계로 지적받아왔던 낮은 급여수준을 상향시켜 노후소득보장과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정책의지를 갖고 본 제도를 실시하였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공공부조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국민소득과 연계되어 지급되는 공적연금의 한 형태로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 지급범위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초연금 제도의 불명확한 성격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자원에 비해 그 효과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제도 시행 만 5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기초연금제도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령가구에게 정책효과를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연금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할 때 사용하였던 소득기준의 지표 이외에도 소비지출 같은 보다 직접적인 지표를 추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분석방법으로는 기초연금의 정책개입(policy intervention)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평가방법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과 준실험적모델인 이중차이(Difference-in-Difference)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

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정책수혜집단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력을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내리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노후소득보장제도 개괄

소득보장이란 질병, 노령,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단기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 그러한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김태성 & 김진수, 2013). 이는 크게 국가에 의한 공적소득보장과 주로 자녀 등의 가족, 친족, 자선기관 등에 의한 사적소득보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공적소득보장은 국가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의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세금감면 혜택 등의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 구분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 중에서도 고령이라는 소득상실위험에 대비하여 국가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공적연금제도(pension scheme)와 공공부조제도(public assistance scheme), 일부 국가에서는 노령수당제도(the aged allowance scheme)의 형태로 존재한다(석재은 & 김태완, 2000). 이러한 공적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공통적인 목표는 크게 1)최저소득 보장과 2)적정한 생활수준 보장으로 볼 수 있다. ILO(1997)는 사회구성원이 빈곤 위험, 노령, 장애 등과 같은 사회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 적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정책목표로 보았다. 유사한 맥락에서 OECD(2011)는 공적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은퇴 이후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수준이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에 최저소득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호해야한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는 개별 국가의 정치사회적 여건에 기반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 정책적 수요 등에 조응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개편과정에서 공적노후보장 제도는 일정한 형태로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원종욱 외, 2015). 일반적으로는 기본소득보장 목적인 1층 연금과 보험방식의 소득보장 목적인 2층 연금(earning-related pension)으로 구성된다(OECD, 2013; 원종욱 외, 2015). 이들은 공적연금으로서 제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기초보장의 역할을 확대해왔다. 한국의 기초연금은 1층 연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

이나, 낮은 급여액 수준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등으로 인하여 제도적 성격에 대한 논쟁이 도입 초기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이종성, 2018)

2.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기초연금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 최초의 복지제도는 1991년에 도입된 ‘노령수당’이다. 사회발전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특성 상 주로 자녀, 가족 등의 사적관계망에 의존하여 빈곤완화와 최저생활수준 보장이 이루어져왔다. 이에 노후소득 보장을 제도적 차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1991년 노령수당제도가 도입되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의 일부 저소득층 노인에게 1994년을 기준으로 월 15,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제도의 대상이 확대되었다(윤찬영, 1996). 다만, 노인 보호시설, 복지시설에 생활하거나 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공적노후소득보장제라기 보다는 공공부조에 가깝다고 보는 반론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노령수당은 무기여형인 ‘경로연금’으로 개편되어 1998년 시행되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99년 기준 575,000명의 노인에게 매월 2~5만원의 연금을 지급하였고 수급대상자에게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은 37만원 수준이었다(임용빈, 2016). 수급률은 이전의 노령수당이 전체 노인 인구의 10% 내외였던 것에 비해 18% 정도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선정기준의 합리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중복수급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또한 예산상의 한계로 인하여 2007년 폐지 당시에는 수급률이 14%에도 미치지 못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이에 따라 부정수급이나 이중수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급률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곧 기초노령연금 제도 마련의 기본방향이 되었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인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998년부터 지급하고 있던 경로연금 지급제도는 폐지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범위는 도입 초기(2008년 1월~6월)에는 만 70세 노인의 소득 하위

60% 수준이었고, 2008년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60%로 확대되었다. 이때 급여 수준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 수준인 9만원으로 설계되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2007년 7월 27일 법 개정을 통해 2009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로 상향조정되었다. 급여수준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0% 수준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각 연금액의 감액비율을 16.5%에서 20%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에는 수급액이 상당히 낮은 편(2014년 기준 약 9.7만원)으로, 실질적인 노인빈곤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다수 존재하였다(강성호·최옥금, 2010; 김재호·정주연, 2012; 장현주, 2013)

3. 기초연금제도의 개괄 및 현황

2014년 7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고 기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완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였다. 기초연금은 현실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이 상당히 적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도입되게 된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기여한 노인세대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공적연금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급여액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는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노인 전체로 할 것인지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노인 중 소득 하위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2014년 5월 2일 기초연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최고 월 20만원이 지급되었다. 기초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은 폐지되었다.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액(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혜자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액을 차감하여 최소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액(A값)의 5%에 해당하는 약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또한, 추가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표 1>은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기초연금 수급률

구분	연도		수급범위	수급자 수	수급률
기초노령연금	2008년	상반기	70세 노인, 소득하위 60%	194만명	61.0%
		하반기	65세 노인, 소득하위 60%	290만명	57.3%
	2009년		65세 노인, 소득하위 70%	363만명	68.9%
	2010년			373만명	67.7%
	2011년			382만명	67.0%
	2012년			393만명	65.8%
	2013년			404만명	64.7%
	2014년	상반기		416만명	65.1%
하반기		435만명		66.8%	
기초연금	2015년			449만명	66.4%
	2016년		458만명	65.6%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기초연금 사업안내」, 2014 &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보는 보건복지」, 2017, 재구성

기초연금의 산정방법은 국민연금 수급권자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하였으며,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는 기준연금액에서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 일부(3분의 2)를 기초로 산정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국민연금 미가입자,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문재인정부는 기초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25만원으로 상향하고, 향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18).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이 A값의 5% 수준에서 급여액이 책정된 반면, 기초연금은 그 2배에 해당하는 10%로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기초연금이 노인빈곤문제 해결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나, 정부의 이 같은 낙관적 견해와 대조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가장 중추가 되는 공적이전소득은 바로 국민연금이지만 국민 연금은 어디까지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이며, 생산가능 연령 때의 납부기간과 납부액이 연금수급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공공부조의 성격이 명확하다. 그러나 두 제도와는 달리 기초연금은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

기초연금의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범위는 보편적이어서 공공부조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이 공적연금제도의 일부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급여액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산정되며,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의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기초연금이 포괄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보완적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초연금 제도의 불명확한 성격으로 인해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자원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채정(2013)은 가구유형별 지니계수를 토대로, 노인층 내부의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극빈층에 한정해서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과 같이 현금보조의 지급액 상향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가구의 빈곤 문제 해소에 근원적 처방일 될 것인지, 또한, 상향된 지급액이 노인 빈곤을 해소에 기여 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자세하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기초연금 제도의 효과성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연구는 노인 빈곤을 감소와 관련한 정책효과를 다루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의 효과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소득지표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논의는 급여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기초노령연금은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함으로써 노인빈곤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급여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강성호 외, 2010; 김재호 외, 2012, 손미정, 2010; 장현주, 2013). 이에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급여수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재호·정주연(2012)은 소득불평등도 및 양극화 지수를 활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이 소득불평등도 및 양극화 완화에 있어선 그 효과가 저조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아닌 집단에 대해서는 효과적이라는 견해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강성호·최옥금(2010)은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효과 및 소득보장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상대적 빈곤선 이하의 가구는 줄어들었지만, 급여수준의 한계로 인하여 탈빈곤이 아닌 차상위계층으로 이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상훈(2010)은 기초노령연금이 현세대 노인의 연금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기여가 저조하며, 이에 대한 제언으로 수급대상자 확대보다는 가구유형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급대상을 선별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소득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공통점은 소득보장효과를 통해 연금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이 낮아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므로 연금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급액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초연금제도의 효과성을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정수·김준기(2015)는 기초노령연금이 노인의 소득감소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는 있으나, 소비지출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소득을 중심으로 효과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수급액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소비지출 향상에는 그 효과가 저조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소득기준의 지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령기 집단의 경제상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부분적인 접근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의 정책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소득지표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의 도입 전후의 소비지출 변화 같은 직접적인 지표도 추가하여 함께 살펴보았다.

III.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노인가구의 경제적 상황(소득, 소비지출, 빈곤여부)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선 성향점수(Propensity Score) 추정을 통해 정책수혜집단(이하 처리집단)과 정책비수혜집단(이하 통제집단)을 설정한 후, 준실험적모델의 하나인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을 활용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복지패널의 제10차 자료(2014년) 및 제12차 자료(2016년)¹¹⁾를 사용하였다. 제12차 자료를 기초연금 지급시기로 설정하였고, 제10차 자료 대비 소득, 소비지출, 빈곤여부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은 한국복지패널의 제10차(2014년 자료를 2015년에 수집) 자료와 제12차(2016년 자료를 2017년에 수집)자료에서 가구주의 출생연도(1950년생과 1952년생)를 기준으로 최초표본을 설정하였다. 우선, 1952년생은 2014년에 만62세로서, 해당 코호트(cohort) 전체가 2016년에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인 65세에 도달하지 못하는 집단이다. 반면, 1950년생의 경우 2014년 기준 만64세로서, 2014년엔 기초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2016년엔 해당 코호트(cohort)전체가 65세를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충족시킨다.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만 65세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표본선별의 1차적인 과정으로서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수급여부를 판별하였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이고, 복지정책의 대상과 복지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듯, 개략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진단과 비수급집단을 파악한 다음,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거쳐 동질성(similarity)을 확보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였다.

〈표 2〉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562,337	2,60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11) 제10차 자료는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2015년 3월 조사가 실시되었다. 제11차 자료는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2017년 3월 조사가 실시되었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노인가구의 개별적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을 변수로 사용하였고, 각각 독립적인 두 개의 분석모형으로 이를 측정하였다.

소득의 경우 일반적인 경상소득¹²⁾이 아닌 가처분소득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처분소득이란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의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지출을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통계청, 2015). 가처분소득의 증감을 측정함으로써 기초연금이 얼마나 노인가구의 자유로운 소비지출을 가능케 하는 소득 증가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비지출의 경우 가구의 총소비지출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소비지출은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의식주 같은 기본비, 여가활동비, 사회보장 부담금 등 가계가 생활하는 소요되는 총 비용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의 경우 가구원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OECD에서 사용하는 균등화지수(OECD equivalence scale or Old OECD scale)¹³⁾로 각 가구별 가처분소득 · 소비지출을 나눈 후, 정규성(Normality) 충족을 위해 다시 이를 로그 변환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분석방법으로 채택한 이중차이모델에서 독립변수는 시기더미, 집단더미, 그리고 시기더미와 집단더미의 상호작용항이 된다. 시기변수는 2014년 = 0, 2016년 = 1로 코딩된 더미변수이다. 집단변수는 통제집단 = 0, 처리집단 = 1로 코딩된 더미변수이다. 또한 이중차이모델에서 기초연금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시기더미와 집단더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12) 가구원이 근로제공 등의 대가로 받는, 비교적 정기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 자영업에서 얻는 사업소득(혼합소득), 자산으로부터 얻는 이자 · 배당금 등의 재산소득, 정부 · 타 가구 ·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소득 등이 있다(통계청, 2015)

13) OECD equivalence scale은 가구주에 1, 추가적으로 성인 가구원에 0.7, 추가 아동 가구원에 0.5씩의 값을 부여하여 더한 것으로, 소위 "Oxford scale"이라 한다. "Countries which have not established their own equivalence scale"(OECD, 1982)에서 언급되면서 '(old) OECD scale'이라 불린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서 노령기 소득과 소비지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투입한 통제변수들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혼인상태 등의 인구학적요인, 장애여부, 만성질환여부 등의 의료적 요인, 국민연금수급여부의 사회보장제도 요인, 근로여부와 같은 노동시장 요인이다. 통제변수에 가구원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가구원 수는 종속변수인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을 가구원 수에 가중치를 더한 'OECD scale'로 균등화하였기 때문에 따로 통제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3〉 변수의 측정지표

구분	변수명		정의
종속 변수	가처분소득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ln(가처분소득/OECD scale)
	소비지출		가구균등화 소비지출 =ln(가구소비지출/OECD scale)
독립 변수	시기더미		2014년=0, 2016년=1
	집단더미		통제집단 = 0, 처리집단 =1
	상호작용항		시기더미×집단더미 상호작용항
통제 변수	인구 학적 요인	성별	여=0, 남=1
		연령	출생연도
		거주지역	비수도권=0, 수도권=1
		혼인상태	무배우자=0, 배우자=1
	의료적 요인	장애	비장애=0, 장애=1
		만성질환	비해당=0, 해당=1
	사회보장 요인	국민연금수급	미수급=0, 수급=1
	노동시장 요인	근로여부	비근로=0, 근로=1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1) 정책효과의 개념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기초연금제도를 비롯한 여러 공공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의 ‘효과(impact)’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한다. 단순히 정책 수혜에 따른 수혜집단의 성과 변수를 측정하거나 정책 수혜 전과 후의 상태 차이를 밝히는 것은 정책 자체의 효과만이 아니라 여타의 변수들에 의한 영향이 함께 포함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정책의 효과라 말할 수 없다(이석원 외, 2008).

Rubin(1974) 이래 현대 평가연구 사용하는 정책의 ‘효과’는 정책을 수혜 받음으로써 창출되는 ‘부가가치(added value)’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책 입안자들이 진정으로 포착하고자 하는 ‘효과’는 ‘특정 정책을 수혜 받음으로써 얻는 성과와 동일한 집단이 동일한 시점에 만약 정책 수혜를 받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성과와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다(이석원 외, 2008).

따라서 부가가치의 개념에 입각해 기초연금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표본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통제가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시점 내에서 동일한 가구가 기초연금을 수혜 받을 경우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관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책의 엄밀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수급 받는 가구를 처리집단(treatment group)으로 설정하고 이와 가장 유사한 성향을 갖는 집단을 찾아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설정하여, 두 집단 간의 성과차이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는 처리집단과 유사한 통제집단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민인식, 2010). 따라서 Rosenbaum & Rubin(1983)에 의해 소개된 성향점수(Propensity Score) 매칭방법 이후 여러 분야에서 동 분석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강소랑 & 문상호, 2012),

2)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

Rosenbaum & Rubin(1983)에 의해 고안된 성향점수 매칭법(이하 PSM)은 준실험적 방법(Quasi-Experiments)의 가장 큰 약점이라 할 수 있는 표본 선택편의를 보정하기 위하여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성향을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성향점수 매칭은 다음 두 가지 가정에 기초로 한다. 첫 번째로 ‘관찰 가능한 그룹의 특성이 주

어지면 기초연금 정책 수혜여부와 성과변수들은 독립적이다'라는 조건부 독립성의 가정(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과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의 정책수혜를 받을 확률은 공통의 영역 내에 있다'는 공통영역의 가정(common support assumption)이 그것이다(Rosenbaum & Rubin, 1983; Dehijia & Wahba, 1999; Zhao, 2004).

가정 1 : 조건부 독립성의 가정

$$(Y_1, Y_0) \perp T | X$$

가정 2 : 공통영역의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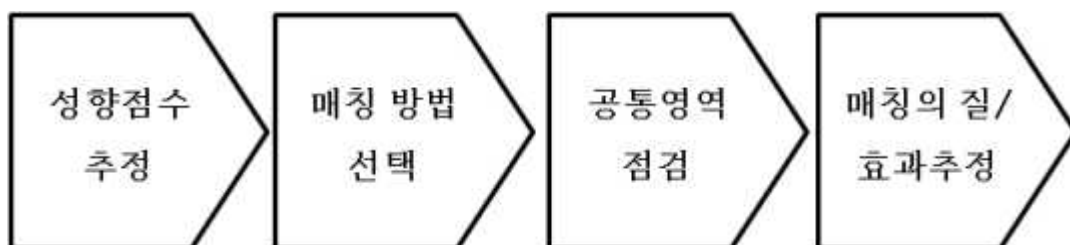
$$0 < \Pr(T=1|X) < 1$$

조건부 독립성의 가정은 매칭의 타당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정으로, 성과와 관련된 모든 차이는 관찰 가능한 변수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관찰되지 어떤 특성도 기초연금 지급 여부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관찰된 변수들에 의해서 정책수혜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위 두 가정이 만족되면, 정책수혜여부를 결정하는 충분한 수의 통제변수가 존재할 때 표본 선택의 편의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여기서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는 정책수혜 집단의 관찰 가능한 변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들의 정책수혜를 받을 조건부 확률을 의미한다(Rosenbaum & Rubin, 1983; Becker & Ichino, 2002; Franklin et al, 2012). 그리고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은 실제 처리집단을 구성하는 각 관측치마다 가장 가까운 성향점수를 갖는 관측치를 짝짓기 하여 통제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상현 외, 2011; 강소량 & 문상호, 2012).

성향점수 매칭에 의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 1>와 같은 단계를 구성하였다.

<그림 7> 성향점수 매칭의 분석단계



주) Caliendo & Kopeinig(2008) 재구성

3) 단순이중차이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진실험설계(true experimental design)나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 방법을 활용한다(강소량 · 문상호, 2012).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이라는 정책개입(policy intervention)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준실험설계인 이중차이(difference-in-difference)모델을 사용하였다.

이중차이모델은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집단을 두 개로 나누어 한 집단에는 정책변수를 처리하고 한 집단에는 정책변수를 처리하지 않고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하는 설계를 말한다(남궁근, 2009). 즉, 처리집단(기초연금 수급)과 그에 대응하는 통제집단(기초연금 비수급)을 설정하고, 두 집단의 시점에 따른 성과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험집단의 정책개입(변화) 전후 성과(outcome) 차이에서 통제된 통제집단의 정책도입 전후 성과 차이를 차감한 것을 순수한 정책효과라 할 수 있다(석재은, 2007).

〈표 4〉 단순이중차이 비교

	t=0 (2014년)	t=1 (2016년)	시기간 차이
처리집단	Y_0	Y_1	$(Y_1 - Y_0)$
통제집단	Y'_0	Y'_1	$(Y'_1 - Y'_0)$
집단간 차이	$Y_0 - Y'_0$	$Y_1 - Y'_1$	$(Y_1 - Y_0) - (Y'_1 - Y'_0)$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정책개입 효과는 ‘기초연금 수급효과’이다. 따라서 단순이중차이 모형에서는 기초연금 도입 전후로 통제집단과 처리집단의 경제 상태를 비교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기초연금의 정책효과로 파악하였다.

4) 이중차이 회귀분석

단순이중차이 분석으로 산출한 통제집단과 처리집단 간의 차이는 시간에 따른 종속변수의 자연적 변화(time-varying)를 통제하지 못하므로 정책의 순수한 효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민인식 · 최필선, 2014). 따라서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및 기타 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정책개입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석재은, 2010). 본 연구에서 사용

한 회귀분석 식은 다음과 같다.

$$Y = \alpha + \beta_1 \text{time} + \beta_2 \text{group} + \beta_3 (\text{time} \times \text{group}) + \beta_4 \text{control} + \varepsilon$$

Y 는 정책개입의 성과인 종속변수, α 는 상수항, β 는 회귀계수, 정책개입 시점 전후를 나타내는 시기더미(time), 처리집단인지 통제집단인지를 나타내는 집단더미(group), 정책개입 전후 집단 간 이중차이 효과를 나타내는 ‘시기더미와 집단더미의 상호작용항(time × group)’,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종속변수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통제변수로 구성된다. 종속변수의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의 경우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표 5> 이중차이 회귀분석

	t=0 (2014년)	t=1 (2016년)	시기간 차이
통제집단	$\alpha + \beta_4 + \varepsilon$	$\alpha + \beta_1 + \beta_4 + \varepsilon$	β_1
처리집단	$\alpha + \beta_2 + \beta_4 + \varepsilon$	$\alpha + \beta_1 + \beta_2 + \beta_3 + \beta_4 + \varepsilon$	$\beta_1 + \beta_3$
집단간 차이	β_2	$\beta_2 + \beta_3$	β_3

이중차이 회귀분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변수는 바로 정책개입에 따른 순수효과를 보여주는 상호작용항(time × group)의 β_3 값이다. 또한 시기더미 변수는 여타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정책개입 전후 성과 차이를 보여주며, 집단더미는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성과 차이를 보여준다.

이중차이 분석에서는 정책개입 전후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만 측정되지 않은 외부요인들이 처리집단(treatment group)과 통제집단(control group)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민인식·최필선, 2014). 따라서 이중차이 분석을 통해 정책개입의 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통제집단과 처리집단 간에 정책개입 유무만 차이가 있고 그 외에 요인들은 비슷한 집단으로 설정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의 150%에 도달하지 못한 가구를 1차적으로 추출한 후,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해 처리집단(기초연금 수급)과 통제집단(기초연금 비수급) 간 동질성(Similarity) 확보에 주력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성향점수(Propensity Score Matching) 추정

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정책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성향점수 추정을 통해 정책수혜집단(이하 처리집단)과 정책비수혜집단(이하 통제집단)을 설정한 후, 이중차이모형을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노인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성향점수 추정에 앞서 최초로 수집된 표본은 한국복지패널의 제10차(2014년 자료를 2015년에 수집) 자료와 제12차(2016년 자료를 2017년에 수집) 자료를 통해 수집한 1950년생과 1952년생이 다(가구주의 나이를 기준). 1952년생은 2014년 만62세(1952년)에 해당하여, 해당 코호트(cohort) 전체가 2016년에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인 65세에 도달하지 못하는 집단이다. 반면, 1950년생은 2014년 기준 만64세로 기초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2016년 코호트(cohort)전체가 65세를 초과 수급연령을 충족시킨다. 이렇듯, 개략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을 파악한 다음, 성향점수 매칭을 거쳐 동질성을 확보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였다.

우선 성향점수를 추정하기 위해 정책 수혜여부를 나타내는 이변량 변수와 통제변인들을 투입한 후, Probit 모형으로 이를 추정하였다. 매칭방법으로는 Nearest Neighbor Matching을 선택하였다. Nearest Neighbor Matching은 추정된 성향점수를 기준으로 실험집단을 구성하는 개체와 가장 근접한 개체 하나만을 비교집단으로 이용하여 매칭하는 방법이다(Smith & Todd, 2005). 이 방법의 경우 항상 매칭되는 짝을 구성하여 관측치 확보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둘 사이의 성향점수가 크게 차이가나는 경우에도 매칭이 되어 매칭의 질이 낮아지고 편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박상현 외,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캘리퍼(Caliper)를 적용하여 두 개체의 성향점수가 일정 간격(여기서는 $\text{Caliper} = 0.05$) 이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칭을 실시하였다¹⁴⁾.

14) 캘리퍼는 “성향점수 간의 거리(distance)로 정의되는 성향의 범위(propensity score)를 의미한다(이정화 & 문상호, 2014; (Caliendo and Kopeinig, 2008). 캘리퍼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은 없고 통상적으로 0.01~0.00001이 사용되고 있다. 엄격하게 거리의 차를 정할수록 매칭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을식, 2008)

〈표 6〉 성향점수 Probit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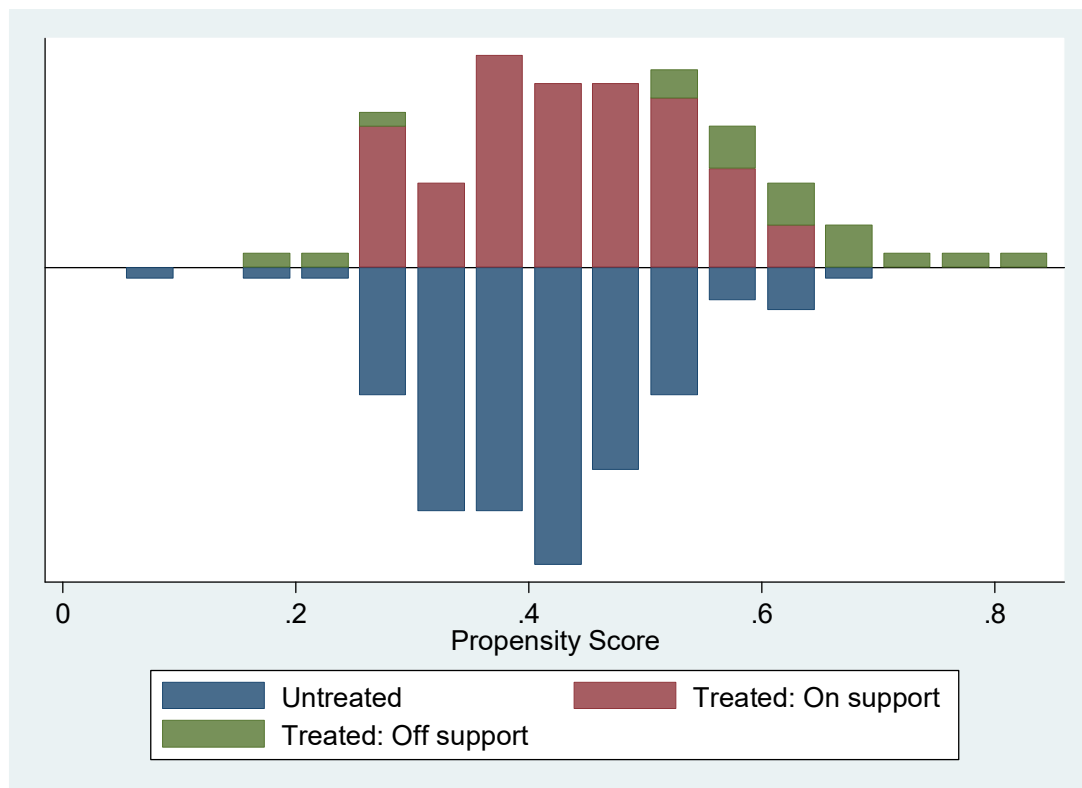
변수명	Coef	Std. Err	P> z
성별	0.5162	0.2681	0.054
거주지역	-0.0786	0.2054	0.702
혼인상태	0.2164	0.2613	0.408
장애	0.0382	0.2378	0.872
만성질환	0.1008	0.2301	0.661
국민연금수급	-0.3165	0.1825	0.083
근로	-0.1335	0.3087	0.665
가처분소득	0.0003	0.0001	0.035
총생활비 지출	-0.0009	0.0016	0.551

주1)* p<0.1, ** p<0.05, *** p<0.01

주2)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주3)종속변수는 기초연금 수혜여부를 나타내는 이변량 변수임

〈그림 8〉 성향점수 매칭 결과



〈표 7〉 공통영역(Common Support) 추출

(단위 : 가구)

	원표본	공통영역	
		On	Off
처리군 (기초연금 수급)	96	79	17
통제군 (기초연금 비수급)	128	128	128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 8〉과 같다. 먼저, 주요 종속변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가처분소득의 경우 연평균 1,523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소비지출은 월평균 131만원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52%로 남성 가구주 보다 높았다. 거주지역은 수도권 비중이 25%, 혼인상태는 유배우자의 비율이 39%로 나타났다.

의료적 요인, 사회보장 요인, 노동시장 요인을 살펴보면, 비장애인 비중이 76%를 차지하였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주는 85%에 달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가구 중 48%가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참여율은 17% 밖에 되지 않았다.

〈표 8〉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량

구분	변수명		관찰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 변수	가처분소득(OECD 균등화)		207	1523.87	837.27	112	4699
	소비지출(OECD 균등화)		207	131.70	76.69	18	658
독립 변수	시기더미		207	0.50	0.50	0	1
	집단더미		207	0.54	0.49	0	1
	상호작용항		207	0.27	0.44	0	1
통제 변수	인구 학적 요인	성별	207	0.48	0.50	0	1
		거주지역	207	0.25	0.43	0	1
		혼인상태	207	0.39	0.49	0	1
	의료적 요인	장애	207	0.24	0.43	0	1
		만성질환	207	0.85	0.34	0	1
	사회보장 요인	국민연금수급	207	0.48	0.50	0	1
	노동시장 요인	근로여부	207	0.17	0.26	0	1

2. 단순이중차이

단순이중차이는 t-test 결과를 토대로 2014년($t=0$) 시기에서 2016년($t=1$) 시기로 이동시 발생하는 통제집단과 처리집단의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의 차이(difference)를 의미한다.

〈표 9〉는 처리집단(가구주 1950년생, 2016년 기초연금 수급)과 통제집단(가구주 1952년생, 2016년 기초연금 미수급)의 연평균 가처분소득과 월평균 소비지출에 대한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t=0$ 시기는 2014년으로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 받지 못하는 시기이며, $t=1$ 시기는 2016년으로서 처리집단은 기초연금을 수급 받지만 통제집단은 수급 받지 못하는 시기이다.

연간 가처분 소득에 대한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 기초연금의 정책효과성은 155만원으로서 기초연금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연간 가처분 소득의 시기간 차이, 집단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비지출에 대한 단순이중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처리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함으로써 생활비지출을 약하게나마 증가시켰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표 9〉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

(단위 : 만원)

		t=0 (2014년)	t=1 (2016년)	시기간 차이
가처분 소득	통제집단 (기초연금 미수급)	1487.68 (74.24)	1586.60 (72.16)	-98.91 (103.53)
	처리집단 (기초연금 수급)	1435.02 (115.27)	1689.90 (131.99)	-254.88 (174.59)
	집단간 차이	52.663 (132.88)	-103.30 (135.99)	155.964 (190.10)
소비 지출	비교집단	129.25 (7.76)	130.01 (6.23)	-0.7611 (9.96)
	실험집단	125.67 (14.80)	126.54 (11.49)	-0.8659 (18.94)
	집단간 차이	3.57 (15.30)	3.47 (11.98)	0.105 (19.53)

주1)* p<0.1, ** p<0.05, *** p<0.01

주2)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3. 이중차이 회귀분석

앞서 실시한 t-test에 의한 종속변수(연간 가처분 소득, 월별 생활비지출)의 집단별 · 시기별 차이는 시간에 따른 종속변수의 자연적 변화(time-varying)를 통제하지 못하므로 순수한 정책효과를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다(민인식 & 최필선, 2014). 이에 본 연구는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통계학적요인(sociodemographic factor)을 통제하여 정책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 〈표 10〉은 최소자승법(OLS)를 통한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준다.

가처분소득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한 첫 번째 분석모형에서 시기더미, 집단더미 그리고 기초연금의 이중차이 효과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 변수라 할 수 있는 시기더미와 집단더미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간 연간 가처분 소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으며, 기초연금 수급 후의 가처분 소득과 수급 전의 가처분 소득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시기더미와 집단더미의 상호작용항은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처리집단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통제변수에서는 거주지역, 만성질환 여부, 국민연금 수급 여부가 가처분 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거주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가처분 소득이 높았다. 또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가구일수록 가처분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가처분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 또한 시기더미, 집단더미, 상호작용항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변수에서는 거주지역, 국민연금 수급 여부가 노령기에 접어든 가구의 소비지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시간에 따른 종속변수의 자연적 변화와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이중차이 회귀분석에서 기초연금 정책의 순수한 효과성을 보여주는 시기더미와 집단더미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타 변수들을 통제한 본 모형에서는 기초연금정책의 효과성이 설명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특기할만한 점은 국민연금은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령기에 진입한 수급가구와 수급예정가구 모두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주요한 공적이전소득으로서 노인가구의 경제생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

〈표 10〉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명		가처분소득	총소비지출
독립 변수	시기 더미		135.53 (106.76)	2.58 (11.57)
	집단 더미		20.67 (121.58)	0.27 (13.17)
	상호 작용항		93.87 (172.95)	-3.52 (18.74)
통제 변수	인구 학적 요인	성별	-193.51 (133.92)	-4.46 (14.51)
		거주지역	293.78^{***} (98.54)	31.96^{***} (10.67)
		혼인상태	6.26 (126.42)	-4.46 (14.51)
	의료적 요인	장애	-162.71 (117.18)	-6.35 (12.69)
		만성질환	-209.15[*] (108.76)	-2.12 (11.78)
	사회보장 요인	국민연금	388.30^{***} (81.94)	22.44^{**} (8.88)
	노동시장 요인	근로	20.08 (146.92)	3.74 (15.92)
	Cons			1589.46 (260.36)
Number of Obs.			207	207
R2			0.2207	0.1185

주1)* p<0.1, ** p<0.05, *** p<0.01

주2)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V. 결론

본 연구는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 정책의 효과성 평가하기 위해 노령기 가구들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지출 같은 경제지표들의 변화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평가방법 중 하나인 성향점수 매칭(P propensity score Matching)과 준실험적 모델인 이중차이(Difference-in-Difference) 분석을 사용하였다. 우선 한국복지패널의 제10차, 제12차 자료에서 최초 표본집단을 추출한 후,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동질성(similarity)을 확보한 처리집단(기초연금 수급)과 통제집단(기초연금 비수급)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수급 시기에 따른 집단 간 경제지표차이를 비교·검증하는 이중차이(difference-in-difference)모델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노령기에 진입하는 가구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가 노령기 가구들의 경제적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순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단순이중차이 분석에서는 기초연금이 노령기에 진입한 가구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지출을 다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지만, 그 증가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다음으로, 이중차이 회귀분석에서는, 노령가구의 경제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순수한 정책효과성을 보여주는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서는 기초연금의 정책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급가구와 수급예정가구 모두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중요한 공적이전소득으로서 노인가구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리하자면 기초연금 시행 이후 구축된 노인가구들의 경제지표 자료들을 토대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초연금의 수급이 노령기 가구들의 경제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초연금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에는 기초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효과가 노령기 가구들의 소득이나 소비지출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집단 간의 발생하는 차이를 넘어서 집단 내 시기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해야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가져올 만큼 현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 특히, 사회안전망 구축이 아직 미비한 우리나라에서 노령기 가구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은 중요한 정책이

수 중 하나이다. 기초연금의 성격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공적연금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가운데 기초연금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기초연금의 정책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수급대상을 유지하면서 수급액을 상향시키거나, 가구의 경제상황에 따라 수급액을 차등화 하여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 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를 통한 종속변수의 차이를 파악할 뿐, 기초연금 수급액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이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기초연금의 수급여부와 수급액을 묻는 문항이 존재하지만, 수급액을 묻는 문항에 다소 많은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어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둘째, 2차 자료의 특성상 노인가구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제도시행 초기의 자료로서 분석 대상에 대한 충분한 관찰치가 확보되지 않아 분석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료구축의 한계를 극복하여 좀 더 타당성 있는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성호, & 임병인. (2009). 노후소득의 불평등 및 양극화와 공적연금의 개선효과. *사회보장연구*, 25(2), 55-85.
- 강성호, & 최옥금. (2010).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17(2), 43-71.
- 강소랑, & 문상호. (2013).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고령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 학회보, 23, 59-85.
- 김미곤, & 김태완. (2004). 우리나라의 빈곤현황 및 정책과제. *사회보장연구*, 20(3), 173-200.
- 김경아, & 한정림. (2012). 국내 중, 고령자의 공, 사적 연금격차에 관한 연구: 근로유형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연금연구*, 2(2), 143-169.
- 김대철, & 권혁진. (2007). 국민연금제도의 노후빈곤 완화 효과분석-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3), 251-275.
- 김수완, & 조유미. (2006).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및 빈곤율 분석-가구유형별 근로소득과 공적 연금소득의 비중 및 빈곤제거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9(단일호), 5-37.
- 김재호, & 정주연. (2012).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변화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1(1), 421-446.
- 김환준. (2002).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빈곤측정상의 쟁점과 이에 따른 국가간 빈곤의 편차. *사회복지연구*, 19(단일호), 71-101.
- 남궁근. (2009).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 박정수, & 김준기. (2015). 기초노령연금이 소득 및 생활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 345-370.
- 박혜석, & 권혁주. (2015). 장애인연금의 정책효과성에 관한 연구-중증장애인가구의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4(1), 111-136.
- 변금선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노동정책연구*, 5(2), 3164.
- 석상훈. (2010). 저소득계층의 빈곤이행과 소득변화. *사회보장연구*, 26(3), 25-47.
- 석재은, & 김태완. (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 석재은. (2010). 공급자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34-44.
- 석재은. (2010). 이중차이모델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의 영향 분석. *사회보장연구*, 26(3), 73-98.
- 손미정. (2010).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7, 345-361.
- 손병돈. (2009). 노인 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불평등 요인분해. *한국노년학*, 29, 1445-1461.

-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 최현수.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11.
- 유미향. (2015).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 빈곤완화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5. 2
- 이상은. (2004). 근로능력 빈곤가구에 대한 빈곤정책의 방향. 사회보장연구, 20(3), 27-56.
- 이정화. (2014).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기초연금의 효과성 분석. 한국정책연구, 14(3), 49-67.
- 이정화, & 문상호. (2014). 기초연금이 고령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성향점수매칭 (PSM) 이중차이 (DID) 를 활용한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3(3), 411-440.
- 이재정, 권혁주 (2016). 기초연금의 정책효과 분석. 한국행정논집, 28(3), 365-388.
- 장미혜. (2013). 여성노인의 생활실태와 빈곤해소 방안. 보건복지포럼, (206), 18-27.
- 장현주 (2013). 공적연금제도의 노후빈곤 완화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4), 265-286.
- 지은정. (2011). 선진자본주의국가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완화효과: 이중차분접근. 사회복지연구, 42(4), 263-293.
- Heckman, J. J., Ichimura, H., & Todd, P. E. (1997). Matching as an econometric evaluation estimator: Evidence from evaluating a job training programme.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64(4), 605-654.
- Ringen, S. (1988). Direct and indirect measures of poverty. Journal of social policy, 17(03), 351-365.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생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박귀옥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현상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수급노인이 ‘무엇’을 경험 했는지 와 그것을 ‘어떻게’ 경험 했는지 로 기술된다. 이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현상학적 연구 방법 중에서 인간 개인의 경험에 관한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Giorgi 기술적 현상학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기초연금제도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노인복지정책이다. 한국사회는 현재 2018년도 노령인구 비율 14.3%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 했고,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 1위로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빈곤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노인빈곤은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그 중 독신 노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취약점과 가장 극빈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듯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 현상과 노인빈곤은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발전을 정부의 중요한 현안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주요 정책으로는 먼저 개인 기여를 통한 국민연금,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준 사회수당에 가까운 기초연금제도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이다. 이중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빈곤이 그 어느 사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은 절대빈곤 감소뿐만 아니라 노후 소득보

장에 있어서 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에도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경로연금의 비효과적인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시혜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그러나 2014년도에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되면서 '기초연금법'이 제정되고, 그 수급액도 기존수급액보다 2배로 늘어났다. 이 제도의 표면적인 변화로만 보면 한국사회는 미약하지만 전 국민의 취약계층이 보편적인 연금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서구 복지국가형태에도 근접하게 되었다. 또한 노인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점과 노령세대와 근로세대 간에 소득재분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정체성 및 재정적 부담의 증가에 대한 우려와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기초연금이 공공부조인가 연금인가라는 제도의 모호한 성격에 관한 논의와 막대한 소요재정에 따른 수혜대상의 확대, 급여수준의 증대에 대한 우려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와중에는 정치적으로 노인 표를 의식한데서 오는 퍼주기 식 정책이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 제도는 단일 복지사업으로는 우리나라 복지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소득하위 70%가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정책이다(이지호, 201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또 하나의 정책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이다. 한국사회의 노인빈곤은 노인이 퇴직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감소와 나이가 들면서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려워짐으로 나타나는 소득단절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일찍이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기틀을 제시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도 지적한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확산시키고 있는 '활동적 노화 (Active Aging)' 개념을 채택하여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사업은 노인들에게 일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은 물론 삶의 질 제고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국가의 생산성 증대, 사회적 부담의 경감, 노인빈곤 감소 등 사회적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고령사회는 물론 초 고령사회를 대비한 대표적인 노인고용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노후소득보장뿐만 아니라 노인의 건강증진, 사회관계 회복과 소외, 우울증 및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낙관하기에는 이른다. 아직도 정부의 정책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정부의 조세능력은 여전히 낮으며, 가족에 대한 의존도

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로서의 역할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권적 사회권을 충족하기에도 사회복지체제가 서구복지국가에 비하여 불안정하기 때문이다(김윤태, 2013). 그렇다 할지라도 한국의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대부분 노인일자리를 통한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삶을 조명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기초연금의 경우 다소 의견차이가 있긴 하나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 그 결과가 노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이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보기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이 경험하는 생활은 다소 진부하고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생활의 경험 없이는 그들의 삶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주체자로서 개인은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런 개인의 경험이 들어나야 생활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정부의 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한 기존연구가 제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경험되어지는 생활들을 선 이해 없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경험이 생활 속에서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 질문은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경험하는 생활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II.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

본 연구는 Husserl의 현상학을 기본철학으로 하여 계승발전 시킨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lived experience)의 공통적 의미들을 기술하는 방법이다. 또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것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상학의 기본적인 목적은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들을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로 축소하는 것이며(조흥식 외, 2015).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노인의 생활경험을 통하여 현상을 확인하고, 확인된 경험들을 자료로 수집하여 개인에게 나타나는 경험의 본질에 대한 복합적인 기술을 전개한다. 이러한 기술은 노인이 ‘무엇’을 경험 했는지 와 그것을 ‘어떻게’ 경험 했는지 로 기술되어 진다(Moustakas, 1994; 권지성외, 2015). 이러한 현상학 연구는 한 개인이 그의 생활세계에서 직

면하는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들을 최대한 배제한 채 선 개념과 편견을 괄호 속에 묶어두는 판단중지(bracketing)로 그 현상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연구 방법이다(이근호, 2007; 이해경, 2015). Giorgi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4단계로 분석되어지며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여러 번 내용을 듣고 인식 한다. 둘째,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의미단위를 분류 한다. 셋째, 분류한 중심의미를 학문적 용어로 변형 시킨다. 넷째, 도출된 중심의미를 구조적으로 통합 한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통합된 중심의미를 각 참여자의 관점에서 특성을 상황적 구조로 체계화한 후 다시 하나의 일반적 구조로 통합하여 진술한다(양현주, 2015). 따라서 연구자는 이와 같은 현상학적 연구방법 4단계를 활용하여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본질과 의미를 분석한다.

2.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생활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심층면접을 통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가 연구에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연구자는 이러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연구 표집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를 직접 선정하는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주명순, 2016). 이 표집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를 통하여 자료를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Cote, & Turgeon, 2005; 고문희, 2014).

연구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기초연금 수급노인으로 연구주제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대상자를 의정부와 서울의 노인복지관 3곳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고려사항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노인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한 대상으로 제안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9명으로 60대 1명, 70대 8명이며, 성별은 남성은 3명, 여성은 6명이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의 보상으로 간단한 식사 대접과 소정의 연구 참여 비를 전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1>과 같다.

〈표 -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성명	성별	나이	지역	재정관리비	수급기간
참여자 1	여	74	경기도	165.000 +220,000	8년
참여자 2	여	77	경기도	165,000 + 220,00	9년
참여자 3	여	75	경기도	165,000 + 220,00	6년
참여자 4	여	77	경기도	165,000 + 220,00	4년
참여자 5	여	69	서울	165,000 + 220,00	4년
참여자 6	여	71	경기	165,000 +700,000	6년
참여자 7	남	77	서울	165.000 +220,000	9년
참여자 8	남	74	서울	165.000 +220,000	8년
참여자 9	남	73	서울	165.000 +220,000	7년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은 Giorgi가 개발한 현상학적 체험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절차는 연구 참여자를 심층면접하면서 내용을 녹취한 후, 그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듣고 필사하여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주명순, 2016).

연구의 1차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으며, 2차 추가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되도록 쉽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도록 표준어를 사용하였으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연구자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서 진행하였다. 녹취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부족하거나 보완 할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 면접기간에 보완 하였고, 시간과 거리상 추가 면접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추가 면접을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본 연구자가 비 구조화하여 사용하였으며, 심층면접하기 전 면접동의서를 작성하고, 녹취 허가와 함께 진행하였다. 면접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 진행하였고, 30분 간격으로 10-15분정도 휴식시간이 주어졌으며, 전화상담은 5분에서 10분정도 진행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및 연구의 엄격성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 승인(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을 받았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선정, 개인정보 보호관리방안, 연구 참여 동의서 및 연구 참여 설명서 절차, 연구윤리서약서, 자료 보관 및 폐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4가지의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 첫째, 사실적 가치(ture value)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심층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한 중심의미에 대한 결과를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검토를 받아 결과에 반영했다. 둘째,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이다. 자료 분석의 내용을 연구 참여자에게 돌아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자 스스로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선 이해에 대한 가정을 연구 전에 미리 제시했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확보이다. 연구자는 자료에서 발견된 소주제와 본질적 주제에 대한 분석적 사고를 위하여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하여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으며, 각 면접에서 나온 분석내용과 다른 차기 자료를 검토하여 공통적인 의미를 찾아내어 다르게 제시된 내용은 전체 자료와 비교하여 그 다름의 의미를 가변적으로 해석하고 상충되는 의미를 찾고자 노력했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확보이다. 면접하기 전 연구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믿음과 판단, 선 이해와 가정을 내려놓고 중립적이기 위하여 선입견과 편견을 최대한 배제했다(이해경, 2015 재인용).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삶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생활의 본질적인 의미를 Giorgi 기술적 현상학 4단계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90개의 의미단위를 추출하고 12개의소주제와 5개의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이 구성요소를 구조적으로 통합하여 상황적 구조로 체계화한 후 다시 하나의 일반적 구조로 통합하여 본질을 진술한다. 그 내용은 다음<표-2>,<표-3>와 같다.

〈표-2〉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경험 구성요소 및 간략제시

소 주제	본질적 주제	본질적 의미
삶의 끝에서 부르는 반가운 소식	삶의 새로운 희망	노후생활에 도움 되는 안심사다리
일자리의 기쁨		
삶의 막다른 길목에서 적자쓰기	여전히 궁핍한 생활	
힘겨운 내핍생활		
기준선 하나로 갈리는 노후생활		
돈의 문턱		
불공정한 선정의 불만	제도의 구멍	
타성에 젖은 행정		
나만의 짬뽕돈	삶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선물	
당연한 보상		
캄캄한 밤에 빛줄기	든든한 생명줄	
샘솟는 안심통장		

〈표-3〉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경험 구성요소 세부제시

의미단위	소주제	본질적 주제
• 65세가 되면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옵. • 연락이 없으면 먼저 찾아가서 신청하면 됨. •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이 수급유무 확인해줌. • 통장사본이나 복사 본을 제출함. • 수급요건 확인 후 해당 달 25일 통장으로 지급됨. • 본인 재산이 약 1억2천만원 ~ 1억5천만원이하 이면 수급 받을 수 있음. • 월 평균 소득 인정 액 기준으로 이하인 분께 드림. • 초장기에는 8~9만 원대 받았음. • 현재는 164,000 ~ 206,000 받고 있음.	삶의 끝에서 부르는 반가운 소식	삶의 새로운 희망
• 시청에서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노인일자리 알선. • 2인1조로 일함. • 노인일자리 매월 1주일 3번 3시간씩 총30시간 일하고 22만원 받음. • 10개월, 1년 단위로 일함. • 60만 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일자리에서 제외 됨. • 말동무 하고 앉은자리 조금 도와주라고 교육받음. • 두 가지일 못하게 함. • 일자리가 있어서 마음이 안정되고 든든함. • 삶의 의미가 생김. • 노인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보호대상자임. • 노인일자리 하면서 박스 줍기 중단 또는 줄임.	일자리 기쁨	
• 자녀 생활비 지원 전혀 없음. •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부담주기 싫음. •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자녀들이 10만원씩 줌. (명절, 생일, 어버이날 등) • 박스, 옷을 줍거나 얻어서 내다 팔아 생활비 충당 함. • 생활비 확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함. • 월세 수입이 있으나 이자로 모두지출 됨. • 주택담보대출 빚과 이자로 생활고 큼. • 은행에 빚으로 집이 넘어갈까봐 염려됨. • 빚이 사는데 가장 큰 짐임.	삶의 막다른 길목에서 적자쓰기	여전히 궁핍한
• 노인일자리 수입으로 생활비 충당 함. • 일자리 나가면 수요자가 돈 주는 것처럼 노예처럼 막 부려서 자존심이 상함. • 교육받을 때 안 해도 되는 일을 시켜서 속상함. • 수요자 설명을 해도 잘 지켜지지 않음. • 정신이 흐리고 귀가 어두워도 생활이 어려워 일함.	힘겨운 내핍생활	

• 대부분 병원비, 주식, 세금, 교통비로 지출함. • 세금은 안내면 끊으니까 부담스러움. • 수술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서 힘 듬. • 의료비 중에서 검사비가 너무 비쌘. •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안 먹고 안 씹. • 과일, 고기는 사먹을 엄두도 못 냄. • 경조사비, 손자손녀 용돈이 지출될 때 부담스러움. • 몸 쓰는 일만 하다 보니 힘 듬. •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수입으로 생활이 빠듯함. • 없으면 없는 대로 삼. • 물 쓰는 것, 목욕하는 것, 빨래하는 것 모두 절약함. • 집 있다고 생활이 어려운데 기초연금, 일자리 주지 않아 동사무소에 가서 사정이야기한 후 받기 시작함. • 벌어 놓은 비축금, 기초생활비가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부러움. •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중 정부에서 나오는 정부미 쌀이 좋지 않다고 먹지 않고 다른 일반인에게 판매함. • 기초연금 수급자들 일부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파는 쌀을 사먹음.	기초선 하나로 갈리는 노후생활	생활	
• 문화생활 하고 싶음. • 복지관 이용하고 싶음. • 취미, 여행, 휴가, 공연 등을 즐기고 싶음. • 가끔씩 외식하고 싶음. • 종교생활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함. •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100만원 정도임. • 아프면 크게 돈 드니까 아프지 말아야함. • 연금액 올려 주면서 같이 세금 올리는 건 반대 함. • 예전엔 텃밭이 있어서 부식거리는 심어서 먹었는데 사먹으니 생활비가 많이 듬.	돈의 문턱		
• 집, 봉고차 소유하고 있어 미 선정 불만. • 연금을 타지않아도 되거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노인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 • 노인일자리 유형에 대한 불만.	불공정한선정의 불만	제도의 구멍	
•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에 대한 행정적 문제의식 제기함. • 수급권자 판별능력에 대한 불신임. • 통장역할에 대한 의구심.	타성에 젖은 행정		
• 개인 통장으로 지급되어 각자 관리하고 사용함. • 각 개인의 것이니 아껴 쓰게 됨. • 지금보다 연금액이 조금 더 인상되길 원 함.	나만의 쌈짓돈	삶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선물	

• 처음엔 돈이 적어서 신경 쓰지 않음. • 연금액이 20만원으로 오르면서 관심을 가짐. • 아무것도 없는 지금 20만원은 엄청 큼.		
• 젊어서 장사하고 생활하면서 세금(재산세, 주민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가에 많이 냈으니 연금 받을 자격 있음. •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나를 알아주는구나 생각함. • 대선공약 100%인상을 기대함. • 받아서 좋은데 자금고갈을 걱정함.	당연한 보상	
• 없으면 굶어 죽으라는 것 임. • 이제는 안주면 청천벽력 임. •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때문에 땀벌에서 일하지 않음. • 삶의 의미가 생김. • 살아도 되겠구나, 살아있을 만 하구나 생각함. • 내일이라도 안주면 절망적이고 비관적 임. • 생활비 없어 막막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음. • 지하철 표가 나와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감사함. • 이 제도가 효자임.	깜깜한 밤에 빛줄기	든든한 생명줄
• 수고도 안했는데 주어서 고마움. • 땀 흘리지 않고, 설움도 없이 주니까 감사함. • 적은금액이지만 주니까 생활에 도움이 됨. • 누가 돈 준적 없는데 나라가 주니까 마음이 편함. • 수급노인 수준에서 연금액에 만족함. • 사는데 한시름 놓이고 든든함.	샘솟는 안심통장	

1. 생활의 새로운 희망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열악한 생활 속에서 힘겹고 외롭게 살고 있었다. 자녀에 대한 지원도 국가로부터의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무료하고 희망 없는 나날의 삶을 지속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였다. 이럴 때 쯤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소식은 절망에 가까운 삶의 끝에서 부르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와 더불어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수급자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소식은 아무런 소득원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주었다. 또한 스스로 생활비를 자력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삶의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다.

1) 삶의 끝에서 부르는 반가운 소식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작은 집하나 가지고 있거나 전세에서 전전공공 하며 살고 있었다. 이른 은퇴와 소득단절로 겨우겨우 연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박스도 좁고, 남이 안 입거나 버리는 옷가지를 주워 다가 팔기도 한다. 자녀의 지원도 없다. 아니 어렵게 사는 자녀의 지원을 바란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어떻게든 스스로 견뎌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삶이 그러했듯이 자녀의 어려운 생활을 너무도 잘 알기에 지원을 바랄 수가 없다. 더구나 국가의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먹고 살아야하는 급박함은 한계에 다달 했다. 먹지 못해도 세금은 내야하고 죽지 않으려니 먹어야하고 병원도 가야한다. 먹는 것을 아낀다 해도 최소한의 음식은 먹어야 한다. 이러한 생활은 참으로 고달프고 고단한 삶이다. 이럴 때쯤 65세가 되던 해 생일이 지나니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에 가까운 삶의 끝에서 부르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얼마나 기뻐할까? 한숨에 달려가 신청을 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 이후 어렵고 힘든 생활에 넉넉 하진 않지만 작은 첫 희망이 되었다.

-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참여자1-5)
- 네 주민등록 가지고 가면 알아서 다 해줘요 그전에는 나오든지 말 던지 우리 신경도 안 썼는데 생일 딱 되니까 주민등록증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구요....(참여자1-5)
- 컴퓨터로 찍어 보더라구요 그리고 집에 가계세요 그러더니 들어왔더라고.... 직접 가서 신청했죠(참여자1-5)
- 그전보다 돈이 올라서 206.000원 이턴가 6천원인지 4천원인지 모르겠네....(참여자1)
- 나는 우리 아저씨 있는게 164.000원돼요(참여자 2)
- 기초노령연금이 처음에는요 10만원 남짓 나왔거든요 그때는 이까짓 10만원이 내 생활에 보탬이 뭐가 되나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참여자2)
- 204,000원 됐다가 지금은 206,000원 된거요(참여자3)
- 2013년도는 96,000 나왔구요 여기 2014년 7월25일부터 200,000만원으로 올랐네요. 그 이전에는 96,800원 나왔고.....(참여자1)
- 통장으로 매달 25일이면 딱 들어와요 (참여자5)
- 우리는 연락이 안 왔어 남들이 가보라고 해서 우리아저씨랑 가봤더니 집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 그때말로 1억5천이 넘으면 안 된다고 서울서 1억5천이 다 넘지 안 넘는대가 어디있어 그래도 안 된 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왔죠. (참여자 2)

2) 일자리의 기쁨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정부행정기관에서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노인일자리를 알선하여 준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던 것 같다. 기초연금에 노인일자리까지 알선해 주니 생활에 여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 연구 참여자들은 노인일자리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노인일자리는 한번 알선을 받게 되면 2인 1조로 10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데, 매주 3번 3시간씩 30시간을 일하게 되며 그 수고비로 22만원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월 평균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를 통해 38만원-42만 원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부부인 경우 그 2배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 남의 도움 없이도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삶의 기쁨을 주고 있었다.

- 시에서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들 한 테 연결을 시켜줘요(참여자2)
- 그럼요 시청 복지과에서요 시청 사람들이 우리를 모집해가지고 복지관하고 연결해서 일자리 만들어 주고 노인네 돕기 일 못하는 노인네 집에 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잔심부름해주고 그래요.(참여자6)
- 작년까지만 해도 일자리가 적어가지고 저기도 떨어져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올해는 일자리 더 많이 늘어서 애지간한 사람다 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좋은 일 한거예요 우리 노인네들은 어디 가서 돈 벌 것어요.(참여자2)
- 통장으로 넣어줘요 다음달 5일에 들어와요. 시에서 줘요 근데 우리는 시하고 관계없이 복지관에서 줘요 일자리 하는 거 있지요 그거 도장 맡아가지고 가서 신고하면은 그거 다음달 5일에 월급이 나와요(참여자5)
- 복지관에서 노인네들 한 달에 10일 일시키고 월급 주는 거(참여자4)
- 복지관에서 일자리 주는 거 가지고 생활하죠(참여자1)
- 일 년도 있고 10개월도 있고 그런데 3월부터 가을까지 10개월도 있고 겨울부터 시작하는 1년 짜리도 있어요 우리야 뭐 12달해도 상관없지요(참여자3)
- 수입이 60만원 넘으면은 이일자리도 안준다고 그러더라고(참여자2)

2. 여전히 궁핍한 생활

소득원이 없는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는 삶의 새로운 희망이자 시작

이 되었지만 적은 금액을 가지고 아끼고 줄일 대로 줄여보지만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생활비 부족으로 집을 담보하고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생활하다보니 원금에 이자에 생활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빚만 늘어나 짐이 되어 힘겨운 내핍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삶의 막다른 길에서 적자를 쓰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판매하는 쌀을 사서먹는 다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고, 그들에 대한 약간의 부러움도 함께 뒤섞여 있었다. 집이 있고 자식이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는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체념하는 듯 했다. 이렇듯 기준선 하나로 갈리는 노후생활을 되새겨 보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원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생활하기에는 돈의 문턱이 너무 높았다. 여전히 궁핍한 생활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희망사항으로 생활을 그저 이어갈 뿐 이었다.

1) 힘겨운 내핍생활

연구 참여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그저 그냥 살아있으니 사는 거란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먹는 것을 줄이거나 안 쓴다. 저축해 놓은 비축금도 기초생활비도 없으니 그런 생활은 너무나도 당연한 듯하다. 고기와 과일을 사먹는 것은 거의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보다 더 이들의 생활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가끔씩 지출되어지는 경조사비와 손자손녀들에게 줘야 되는 용돈이었다. 없다고 안줄 수도 없고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받고 안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토로했다. 안 먹고 안 써도 적은생활비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만다. 못 배웠으니 몸 쓰는 일만 하게 되고 몸을 쓰게 되니 힘이 들고, 번다고 별지만 세금과 병원비로, 약간의 식비로, 모두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생활은 여전히 힘겹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없으면 아끼고 그래도 없으면 안 쓰고 그렇게 산단다. 생활은 온통 아껴 써야 되는 것투성이다. 이렇게 아끼고 아껴 쓰는데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 연구 참여자들은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힘겨운 내핍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 노인들이 집은 있어도 벌여놓은 게 없잖아 당장 그든 우선 세금내야 되고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또 먹어야 되잖아 또 병원은 안 죽을라면 가야되잖아 기초생활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노인네들은 지금 없어 우리 노인네들은 그게 제일 힘들어 남들은 집을 갖고 있으니까 저 집은 부자다 그러는데 돈 나올 구멍이 있어야 부자지 집만 있지 생활비가 없잖아(참여자2)
- 우린 같은 사람은 몸쓰는 일만 하고 힘들어 못 배웠으니까(참여자2)
- 일을 해도 돈은 안 되고 힘 만드는 일만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배웠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참여자2)
- 노인들은 정말 세금만 안내고 살면 마음 편하게 살겠어 그것만 아니어도(참여자2)

- 물 사용도 최소한으로 아껴쓰죠 집에서 쓰는 물도 수도세 많이 나오니까(참여자4)
- 손빨래도 많이 하고... 여름에는 세탁기 많이 이용안하고 겨울에는 할 수 없이 사용하지 그렇게 안하면 살수가 없잖아요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참여자2)
- 세금만 안내도 살 것 다고 밥은 굶고 살아도 세금을 안내고는 못 살잖아요 그니까 모든게 끊어버리니까 오직하면 내가 밥은 굶어도 사는데 세금을 안내면 못사니까 그래도 밥 한 꼬니 굶고 살아도 아 세금은 몇 달 안내봐 봐.(참여자2)
- 그렇지요 명절 때 할머니가 돼가지고 줘야줘 안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꼭꼭 줄라 메고 살아야지 살 수 있다 이겨야 빛 안지고 빛 지고 못 살잖아요 그러면서 꼭꼭 줄라매면서 뭐 손 주도 뭐 하다못해 2만원 줄 거 1만원주고 땀치고 1만원만 써라 그러고, 그러고 줄이고 사는 거지요 뭐(참여자1)
- 아니 친척들 결혼하는데 가야 되잖아요 축의금 같은 것 상중 부의금 그런 게 없어도 그런 게 다 날라 와요 인간의 도리라 안 갈수도 없고 그게 크드라구요 2달에 1건씩은 돼요 집안이 많으니까 그래도 보태주는 것은 없어도 그런 고지서는 꼭 날라 오거든 그게 부담이 커요 요새는...세금이나 경조사비가 나가서 그래 그게 생활비보다 더 클 때가 있거든요. 엄청클 때가 있어요(참여자3)
- 안 갈수도 없고 받았으니까 갚다 줘야 되고 그게 다 빚이잖아요(참여자6)
- 먹고 싶은 것을 아무것도 안 먹고 살잖아요 과일도 아무것도 안 먹고 고기를 사먹나 진짜 어찌다 한 번씩 생선이나 한번 사먹고 먼 때나 돼야 고기 사먹지(참여자4)
- 나는 둘이해서 내 생활비 이것저것 해서 있으면 돈100만원 있으면 쓰는 거 병원비며 나가는 거 다 통합해서 둘이 100만원은 있어야 살것더라고...(참여자3)

2) 삶의 막다른 길목에서 적자쓰기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으면서도 자식들에게 피해주기를 싫어하였다. 물론 자녀들도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진 않았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게 더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다. 이러한 피해와 짐이 되기 싫어 그들은 박스를 줍기도 했고, 은행에 마지막 남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었다. 물론 대출에 대한 이자도 본인들이 지불하고 있었다. 이런 생활비는 고스란히 빚이 되었고, 연구 참여자 노인에게 짐으로 작용했다. 자녀들이 특별한 날이나 명절이 되면 용돈조로 10만원씩 주는데 그럴 때는 너무나 그 돈이 소중하단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을까? 삶의 막다른 길목에서조차도 이들은 자녀들에게 피해주기 싫어 적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

- 노인네들도 짐 안 될려고 내가 수급받는 거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참여자1)
- 그제 애로사항이예요 다 은행에 넣어가지고 있는 집이 많아요. 또 노인네들이 그냥 다는 안잡혀 있어도 조금씩 다 빼가지고 써요(참여자2)
- 아유 그나마 그 것 마저 안 나오면 우리가 세금도 못 내죠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진짜 우리는 내가 박스를 줌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거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지요 우리지금 저저 또 시에서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그거가지고 먹고사는 거예요 기초연금하고 먹고사는 거예요 판거 없어요(참여자2)
- 설 명절 때 5만원 10만원 그런 거나 한 번씩 주지(참여자1)
- 우리는 집을 담보를 해놓고 그냥 거기서 빌려가지고 쓰고 조금씩 갚어요 아메로 그르니까 늘 빚이예요 아주그냥 빚이 있어요 빚이 늘 있어요 늘 있으니까 그것은 신경도 안 써요 은행 거기까 은행 거는 이자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줬으니까 거기서 빼나가고 또 조금씩 빼쓰면 조금씩 갚아주고 여기서도 30만원 월세 받아가지고도 거의 다 넣고 또 요거이거(기초노령연금)로 생활하고(참여자5)
- 그냥 빚만 없이 살아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빚이 문제지 뭐 빚 없으면 걱정 없어요 빚만 없으면 진짜 이거 작게 주나 많이 주나 걱정도 안할 것 같아요(참여자6)
- 세 받는 거는 내가 빚이 있으니까 빚 갚는다 생각하고 살고 기초노령연금 30만원 주면 그거하고 노인일자리 그거만 하면은 뭐 생활하지요(참여자1)
- 자들이 생각해서 주면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주나 이렇게 안줘도 되는데 이렇게 나는 힘들어도 그렇게 하고 정 주면 받고 그러면 안벌려 자식한테 안 벌려 자식들이 못 버니까.. 많이 못 버니까 살기 힘 드는데 나까지 생각하려면...그리고 우리는 젊었을 때 살기 힘들게 살아봐서 그 생각이 먼저 들어가 나도 살아보니까 힘든데 내가 너한테 손을 벌리잖나 이 생각이 먼저 들어가(참여자3)
- 그제(빚) 큰 짐이지....(참여자1)

3) 기준선 하나로 갈리는 노후생활

- “우리도 기초수급자가 되면 좋겠어. 그렇다고 있는 집을 없앨 수는 없잖여.....(참여자 2)”
- “연구 참여자1: 수급자들에게 쌀을 주거든
- 연구 참여자2: 그거를 사먹어요
- 연구 참여자1: 그 것을 20kg짜리 수급자들 준다고 그 사람들은 그거 안 먹고 팔어.
- 연구 참여자2: 나는 그거 사먹고 살어. 아니 자기네들은 쌀이 안 좋으니까 말은 시골에서 갓다먹는다고 말하고 좋은 쌀 사먹고 그것은 판다고 나는 그거 지금도 사먹어요 2만5천 원씩 주고 그거 사먹어요“

4) 돈의 문턱

인터뷰를 하는 중 연구 참여자 노인의 생활이 너무도 궁핍하게 느껴져 질문을 던졌다. ‘혹시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다. 답변은 의외였다. 문화생활을 무척 하고 싶다는 것이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운동과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 비용이 없다는 것이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자주 여행도 가고 싶다고 한다. 종교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런 생활을 하려면 몸만 다닐 수 없고 뭔가 내면서 다녀야 하는데 그럴 여유와 자금이 없다는 것이다. 매달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만 되어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소망하는 소박한 생활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이들의 돈의 문턱은 높아만 보였다.

- 그런 사람들은 복지관에서 운동하는 것도 다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운동 뭐 수급자들은 다 공짜래요 무료라고 그러네요 우리는 집 등구리 하나씩 있다고 무료가 아니 예요 돈 줘야 돼 안 그러면 못가요 우리는(참여자1)
- 조금 낮게 산다면은 생활하면서 문화생활도 좀 하고 싶죠 그런 건 맞는데요 그걸 생각했다가도 못해요 생각을 해도 그런 건 항상 뒷전이야 항상 그런 것은(참여자1)
- 복지관에 가면은 한 15천원 주면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여유가 안 생겨서 못 다닌다 생각하니 참 한심하다 생각해요 노인네들은 15천원 이래요 운동하는데 가령 요가한다 하면 고기 15천원 또 서예 할라면 또 돈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못하지요 아예 생각도 못 해봐요(참여자1)
- 그 돈이 좀 더 있으면 문화생활 즐기고 살겠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참여자1)
- 종교를 가지고 싶어도 돈 내야 되니까 못 가져 누가 얼굴만보고 기도만 하면 좋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내고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거기도 못가 나는(참여자2)

3. 제도의 구멍

연구 참여자들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 대한 불만과 노인일자리 유형, 그리고 타성에 젖은 행정 관행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생활고로 어려운 사람들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선별하다 보니 정작 생활고로 고충을 받는 사람들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타성에 젖은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 불거져 나온 결과로 제도의 구멍이라고 볼 수 있었다.

1) 불공정한 선정의 불만

연구 참여자들은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첫째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에는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명의이전하고 기초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가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용돈을 벌려고 노인일자리까지 차지하고 있어 그들로 하여금 좋은 일자리까지 빼앗겨서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었다. 그래도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내하고 다닌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는 벌여놓은 것도 없이 텅텅 집하나 가지고 있는데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 뒤 동사무소에 가서 자신의 처지를 처절하게 이야기한 후 기초연금을 받고 노인일 자리를 시작하게 된 사연을 토대로 불공정한 행정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다.

둘째는 재산이 많은 집에 가서 일하는 일자리를 알선 받는 경우 자신과 비슷한 또래 노인이나 어린 노인에게 마치 노예처럼 취급을 받으며 일한다고 한다. 사실 교육 받을 땐 잠깐 가서 말동무 해주고 주변정리나 해주고 오라고 교육받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일당주고 시키는 일군처럼 막 부려먹는다는 하소연을 했다. 이는 정부가 일자리를 무리하게 급하게 만들어서 공급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많아요 일이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복지사에게 한 뒤로 남이 하던 거 몇 달하고 집이 있다고 안주다가 남이 하던거 또 몇 달하다가 불리들이고 하다가 작년하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참여자3)
- 그러면 이런 거 조사하는 사람이 은행돈까지 알겠어요? 모르는 거지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 앞으로 다 해놓고 다 타먹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은행 빚 갚고 있고 나을 구멍이 없고 집 있다고 부자라고 저기하고 그러잖아 그런 애로사항이 있잖아(참여자2)
-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사람은 안 벌어도 되는데 하는 사람도 일자리 주면 다 가서일하고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은 집 있다고 떨어지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 같고 우리처럼 집은 있어도 없는 사람(참여자1)

- 그니까 그 사람들도 뽐을 때 재산보고 뽐는게 아니라 시에서 내려오면 그것보고 뽐는다는데 그니까 자기 앞으로 돈이 있어도 아들 앞으로 해놓는데 이런 사람은 아들 앞으로 재산을 해놓은 게 없는데 그니까 재산이 있는데 없는 듯이 딸이 있으면 딸 앞으로 자기재산 다 넣어놓고 없다 그리고 자기 재산인데 다 타먹고 일자리가고 다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딸도 없고.....(참여자3)
- 맞아! 근데 우리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보면은 일이 진짜 필요해서 우리손이 가야 할 때는 별로 많지 않아요. 돈도 많아도 80넘어 70, 65세 넘으면 우리보다 덜 먹은 젊은 사람한테 가서 하라고 하면 가서 해야 돼요 일을 그런 일은 안 해줘도 되잖아요. 쓸데없는 시청에서 돈 받아가면서 돈 있는 사람한테 받아가면서 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만드니까 그 령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일 내보낼려고 근데 그제 차라리 그런 사람한테 일자리 내보내지 말고 차라리 돈으로 그냥 주는 게 나아요. 없는 사람한테 차라리 돌려주는 게 낫지 돈 많은 사람한테 보내면요 그 사람들한테 돈 없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우리들 부리면서 자기는 가만 히 앉아서 돈 10원한장 안주고 시에서 우리 돈 받고 일하는데 뭐 지그가 돈 주는 것같이 부리는거예요 그런대가 많아요 (참여자6)
- 우리는 연라이 안 왔어 남들이 가보라고 해서 우리아저씨랑 가봤더니 집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 그때말로 1억5천이 넘으면 안 된다고 서울서 1억5천이 다 넘지 안 넘는대가 어디있어 그래도 안 된 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왔죠(참여자6)

2) 타성에 젖은 행정

연구 참여자들은 기초연금 수급자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공무원들과 통장이 수급자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탁상행정을 하는 것에 대한 불신임이었다. 통장이나 담당 행정공무원이 가구실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타성에 젖은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연구 참여자에게 온 것이었다.

특히 외부로 드러나는 재정적인데이터 보다 내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더 내실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집이 있는 경우 집만 있고 생활비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집을 팔수도 없기 때문이었다. 실생활실태조사가 보다 더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우리보고 검사하라 그러면 재각재각 잡아내는데 검사할 텐데 바보들이 정치하는 거야 뭐야 우리가 그 령고 있지(참여자3)

- 대신도 안 돼요 그리고 돈 있는 할머니들도 아들들이 뭐 서울에서 의사로 있고 뭐 사장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새 얻어서 살면서 수급자로 살았다고 그 어떤 할머니는 여기 살았는데 그것이 뽕이 난겨야 인제 이제까지 탄 거 다 배상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사 가셨어 그 할머니 여기에서 세사는 할머니 있었어요. 암전하게 나와서 앉아 있었거든 몇 년전에 아들이 일곱인데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사장이라고 다 잘 산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혼자서 새로 산거야 여기서 수급타먹고 그런 예도 있더라고(참여자5)
- 그것은 통방장님이 살림을 잘 알아가지고 지출을 잘해서 통방장이 그것을 잘 해야돼 사람들이 진짜로 말하는지 가짜로 말하는지 모르잖어 어느 정도는 꺾고 앉았어야지 통방장이 일을 잘 해야돼 사실은.....(참여자2)

4. 삶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선물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사회에 살면서 나라의 보호도 받았지만 그와 더불어 많은 기여도 함께 병행해 왔다.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금은 지불되었고 생활하면서 구입한 생필품들에 부여되는 부가가치세도 그 기여에 한 몫을 했다. 이러한 삶의 노고에 국가는 연구 참여자들이 삶에서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노년의 시기에 기초연금을 감사의 선물로 지불하고 있다. 비록 적은 씬짓돈에 불과하고 노고에 비하면 턱없는 보상이지만 당연한 보상이고 헌신에 대한 감사의 선물이다.

1) 나만의 씬짓돈

연구 참여자들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직접 관리하고 사용한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서 서로 터치하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기초연금 수급액은 각자 본인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일부로 통장에서 인출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 한 터치할 수 없는 연구 참여자들만의 오롯한 씬짓돈이다.

그렇다보니 아껴 쓰게 되고 소중하게 생각된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염치없지만 금액이 좀 더 올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냥 나라에서 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인상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리고 처음 수급 받을 때는 10만 원정도의 금액이라 우습게 생각했는데 세금도 내고 병원도 갈 수 있게 되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현재는 20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 “우리는 각자가 써요 얼마 돼지도 않고 각자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뭐 신경 안 써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렇지요 그리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세금도 많이 내고.....(참여자5)”

2) 당연한 보상

연구 참여자들은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서도 온갖 지출을 통해 세금을 지불해왔고, 현재에도 지불하고 있다. 또한 살면서 생필품을 구입할 때도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불해 왔으며,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도 다해왔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받아 생활할 자격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다. 그 동안 삶의 노고에 국가가 주는 이런 보상은 권리로 누려도 됐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는 나라가 잘살게 되니 국민들을 알아주는 구나하고 뿌듯해 하기도 했다. 문제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100%인상을 기대하면서도 자금고갈에 대한 우려도 함께하였다.

- “나도 장사하면서 이거(세금)많이 냈으니까 이제 이거 받아써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저 내가 살면서 부가가치세 많이 냈잖아 옷도 사면 붙고 그제 다 세금아녀? 그 돈 받아서 나라가 부강하게 됐으니까 이거 받아서 써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살아(참여자1)”

5. 든든한 생명줄

연구 참여자들에게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는 이제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기초연금 때문에 이제는 땡벌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박스를 더 이상 줍지 않아도 되었다. 막막한 생활에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캄캄한 밤에 빛줄기처럼 삶의 의미로 다가왔다. 또한 기초연금은 매달 모두 다 써도 매달매달 나오니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샘솟는 안심통장이다.

1) 캄캄한 밤에 빛줄기

연구 참여자들에게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는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의 소득원이 되었다.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나름대로 자족하며 살고 있었다. 기초연금이 그나마 연구 참여자들에게 희망이고 삶의 빛이었다. 이 마저 없었다면 지금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곤 한다. 이 두 소득원 때문에 더 이상 땡벌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박스를 줍지 않는

다. 이제는 기초연금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다. 근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며, 캄캄한 밤에 빛줄기처럼 삶에 희망이 되었다.

- 그래서 이거(기초노령연금) 정말 다 해주는 거 고맙지요 고맙고 뭐 많이 준다면 다 좋고 감사한 일이고.....(참여자 1)
- 안 줄때에 비하면 엄청 도움이 되고 또 그거 가지고는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 사실은 그래도 나오니까 고맙지 뭐 안 줄때에다가 대면은 (참여자2)넉넉하게는 못써도 빠듯하게는 쓰고 있어요(참여자3)
- 큰일 나지요. 인자진짜(참여자1)
- 있다가 없어지면 우리는 그냥 굶어 죽으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참여자1)
- 지금 만족도는 중간정도 돼지요(참여자1)
- 옛날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안 줄때에 비하면 고맙죠, 효자예요 고맙다는 의미지 여기다 양심도 없이 손을 더 벌릴 수 없으니까 말은 못하지 더는 달라고는 못하지 자식한테 말을 못하듯이 정부에서 이렇게 안 해 주다가 해주니까 정말 고맙지 진짜 그런 고마움을 알고 살지 우리는.....(참여자2)
- 그럼요 이거 주는 거 얼마나 고마운데요. 이거도 없었으면 우리 앓아서... 그나마 이것도 안줬으면 지금 뭐하고 있을까 남의 땀별 밭에 가서 일해서 돈 벌어야 하는 거 아니가 그런 것도...(참여자5)

2) 샘솟는 안심통장

연구 참여자들은 수고도 안하고 땀도 흘리지 않고 일하는 설움도 없이 거저주니 감사할 따름이었다. 연금액이 생활에 부족하지만 매달매달 지급이 되니 안심하고 쓰게 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다 써도 다음 달에 또 샘솟는 샘물처럼 매달매달 지급되니 안심하고 믿고 쓰게 되었다.

- “감사하지 아들이든 연금이든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쓰다보면 다 적어 불평하면 안돼지 수고도 안하고 땀도안흘리고 설움도 안받고 직장에서 트러블도 없이 받는데.... 나오면 딱 빼서 쓰고 그러는데 감사하지 ”

VI. 결론

이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한 기존연구가 제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경험되어지는 생활들을 선 이해 없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경험이 생활 속에서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삶의 새로운 희망’ ‘여전히 궁핍한 생활’ ‘제도의 구멍’ ‘삶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선물’ ‘튼튼한 생명줄’로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본질적인 의미는 ‘노후생활에 도움 되는 안심사다리’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어려운 생활가운데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노후에 대한 준비도 전혀 되어있지 않았으며, 기초연금과 노인자리가 생활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주 수입원이었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노인 자살률도 그에 못지않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노인자살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박탈로 보고되고 있으며 공적연금과 노인일자리라는 특히 빈곤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강동훈 김윤태, 2018; Osgood, 1984; McCall, 1991; Patricia, 2003). 그러나 그 수준이 절대빈곤을 감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그 처우 또한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4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화정책 의식조사」에 따르면 노후소득원 중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2%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공적연금 만족도는 평균 52%는 되어야한다고 응답했고, 노인복지정책의 영역별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국민의 94.1%와 91.4%가 각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제도의 안정화가 최저 빈민층을 보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대책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지호, 2012).

다음으로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불만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하다보니 수요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불이익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수혜노인들에게서 그대로 확인되었으며, 수요자 교육의 수준도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연구 참여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시행부처의 수요자 교육이 주의나 권고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노인들이 일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일자리는 처음 정부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충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취약계층의 노인빈곤문제는 기초연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노인들을 좀 더 빠르게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3만 5천개의 노인일자리를 시작으로 2015년 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현재 노인의 주 수입원뿐만 아니라 노인고용정책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사회활동과 노인일자리로 분류되는데, 그 중 노인사회활동에서 공익활동부분이 기초연금수급자만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지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은 연구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시하거나 불만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 논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생활경험에 대한 기존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자료의 토대가 부족하여 연구자의 논의가 미흡하지만, 처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경험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행정을 맡고 있는 지역 통장과 행정공무원이 그 지역사회의 수급예정자들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인 기본 데이터만 가지고 탁상 행정 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기보다는 현재 생활에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예정자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알선도 내부적으로 재정비하여 수급노인이 일자리에서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함으로서 고충 받지 않도록 수요자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수요자의 교육이 주이나 권고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노인들이 일자리에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수급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후소득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리하게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노인들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노동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고 그 외 지원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실을 강화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수급자들의 문화생활과 대인교류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자원을 확보하여 지자체와 지역

사회연계 서비스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급자들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하는 문화 생활과 대인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연구결과 확인되었다. 이러한 욕구를 지자체가 지역사회 소모임을 구성하거나 관련 기관 및 동회와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수급자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일하는 즐거움과 함께 남은 여생을 좀 더 유익하고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훈 김운태, 2018,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6가지 박탈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p271-p290
- 김운태 편, 2014, 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 인간과 복지, p86-91
- T.H 마셜 지음, 김운태 옮김, 2013, 시민권과 복지국가, 이학사 p251-255
- 김태성 손병돈, 2016, 빈곤론, 청목출판사
- 김주리, 2012,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가구의 생활 및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 박대식, 최용욱, 2014, 노령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석재은, 2003,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수준 연구, 한국인구학 제26권 제1호 PP79~113
- 이지호, 2012, 기초노령연금정책의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에 관한 인지도분석, 서강대
- 지진표, 2011,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에 대한연구, 고려대
- 주명순, 2016, 간호사와 간호관리자의 포괄간호서비스 제공경험: Giorgi의 현상학적 접근, 중앙대
- 이해경, 2015,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p29-54
- 주경희 외,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시간과 공간적 맥락을 중심으로.
- 민효상 외, 2016,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016년 제 18권 제3호 pp163-188.
- 현외성, 2015, 기초연금 정책형성과정과 복지정치분석, 한국사회복지교육, pp139-165.
- 보건복지부, 2013, 2013년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현황.
- 한경혜 외, 2009, “경험표집법을 통해 살펴본 도시노인의 일상생활 경험” 한국노년학, 제29권, 제3호, PP1159-1182,
- 김미선, 2006, “일상생활, 일상성, 생활과학: ”일상성 연구“의 가정학적 함의,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44, pp. 161-169.
- 권오정 외, 2011, “노인단독가구 유형별 주거공간사용 특성, 한국주거학회, 제22권, 제4호, pp.33-41.
- 김진욱, 2006, “한국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정책, 제22권, pp.133-158.
- 이신숙, 2011, “은퇴한 노인의 생활시간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제20권, 제2호, pp.311-325.
- 김주현, 2007, “생활시간사용으로 본 노년기 생산적 활동”, 한국노년학, 제27권, 제4호 pp.739-754.
- 박민자 외, 2005, “고령 여성과 남성의 일상생활, 사회과학연구, 제11권, pp.121-145.

- 이윤정 외, 2004, “노인의 여가생활시간 소비패턴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제8권, 제1호, pp.101-116.
- 송민경, 2004, “쪽방노인 생화 실태에 따른 정책 제언 연구”, 이화여대.
- 권지성, 2008, “쪽방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4호 pp.131-156.
- 박미정, 2010,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0권, 제1호, pp.62-91.
- 박영미 김병규, 2017,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문 제29권 제4호 p693-717.
- 홍경준, 2018, “소득분배 상황의 악화, 노인빈곤이 문제다”, 현안과 정책 제229호.
- 이남인, 2006, 후설의 현상학과 현대철학, 풀빛미디어.
- Eunhae Shin Young Kyung Do, 2015, *"Basic Old-Age Pension and financial wellbeing of older adults in South Korea"*, Ageing & Society 35, p1055-p1074.
- Ola Sjoberg, 2014, *"Old-age pensions and population health: A global and cross-national perspective"*, Global Public Health, p271-p285.
- Young-Jun Choi, 2006, *"Transformations in economic security during Old age in Korea: the implications for public-pension reform"*, Aging & Society p549-p565,
- Seungho Lee Inhoe Ku Byongdon Shon, 2017, *"The Effects of Old-Age Public Transfer on the Well-Being of Older Adults: The Case of Social Pension in South Korea"*, The Gerontological society America.
- Giorgi, A.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housands Oak, CA: Sage.
- McCall, P. L., 1991, *"Adolescent and elderly white male suicide trends"*, Journal of Gerontology, 46: 643-651.
- Osgood, N., 1984, *"Suicide, In Handbook on treatment in the United"*, E. Palmore(Eds), Greenwood press.
- Patricia, A. H., 2003, *"Evidence-based protocol: Elderly suicide-secondary prevention"*,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9(6); 6-17.

기초연금 확대와 노인 노동 및 생활시간의 변화

이승호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공적이전 급여가 고령층의 노동 및 생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2014년 7월, 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되었다. 기초연금제도는 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동일한 소득인정액 하위 70%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약 2배 가량 인상하였다. 연령 기준이나 소득인정액 산정과 같은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게 유지된 채 급여수준만 조정하는 방식의 제도 변화는, 공적이전 급여의 확대가 수급자에게 미치는 다양한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준실험적인(quasi-experimental)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제도 변화 전후의 변화들을 비교하는 단순한 방법으로도 그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준실험설계에 기초한 삼중차이(triple differences; DDD) 방법을 적용하여, 기초연금의 확대가 수급자의 노동 및 생활시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다.

노동경제학의 전통적인 관점에 의하면, 공적이전 소득과 같은 비노동소득의 증가는 개인의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은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 증가를 가져오고 시간당 임금을 감소시켜서 노동동기를 저하(대체효과)하며, 급여의 수급으로 소득이 증가한 개인들은 여가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소득효과)을 보인다는 것이다(Moen, Sweet, & Swisher, 2005; Ruhm, 1996; 남성일, 2017). 게다가 급여의 수급대상에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포함하는 공공부조 제도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소득의 증가가 급여자격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공급 감소의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구인회, 임세희, 문혜진, 2010; 박상현, 김태일, 2011). 따라서 선별적인 대상에 한하여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확대는

수급집단의 노동공급을 줄이고, 여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여가는 사실상 노동과 비노동의 이분법적 분류에서의 비노동을 일컫는다. 노동공급의 감소는 일상생활에서 노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를 의미하며, 개인의 생활 시간 내에서 범주들 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범주의 변화가 미친 영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생활시간의 관점에서 하위 범주별 변화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전체 생활시간의 관점에서 공적이전 급여 인상 효과의 영향이 엄밀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공적이전 소득과 고령층의 노동공급을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여부(Duval, 2003; Gruber & Wise, 1999; Pampel & Weiss, 1983; 주은선, 박진화, 2010; 지은정, 2008) 또는 임금을 비롯한 각종 소득의 변화 정도(Amuedo-Dorantes & Juarez, 2015; Gasparini et al., 2007; Jensen, 2003; Kakwani & Subbarao, 2007; Lee, Ku & Shon, 2017)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수급집단 내 취업자의 규모 변화(extensive margins)만을 다루고 취업 집단 내에서의 노동시간 변화 정도(intensive margins)를 간과했거나, 혹은 두 가지 효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노동소득의 변화 정도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노동공급의 변화가 어떠한 일상생활의 변화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효과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노동공급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노동시간의 감소가 일상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층의 노동시장참여율과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정리하면, 공적이전의 소득이 수급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여여부 외에 노동시간의 변화 정도를 살펴봐야 하며, 또한 가사나 여가와 같은 노동 외 시간의 변화를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연금제도 도입 전후의 수급대상 집단의 노동시간과 기타 생활시간의 변화 정도를 통해, 공적이전 소득 증가가 노인의 노동 및 생활시간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2014년 7월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증가가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여부 및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변화가 가사(돌봄 포함)나 여가(적극적, 소극적 여가 구분)와 같은 다른 범주의 생활시간에 가져온 파급효과를 살펴본다.

II. 문헌 고찰

1.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준실험적 환경의 조성

한국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수급자의 상당수가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다(정경희 외, 2016).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소득보장제도 중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수급자의 노동 및 생활시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다음의 <표 1>은 기초연금 관련 제도의 변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기초연금제도의 전신은 1991년 도입된 노령수당이며, 이후 경로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거쳐서 2014년 7월에 현재의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노령수당이 도입된 1991년에는 노인의 수급률이 3.4%, 급여수준은 월 1만원에 불과했지만, 1998년 경로연금으로 변경되면서 공공부조 수급노인 외에 차상위계층 노인이 수급대상에 추가되었고, 급여수준도 확대되었다(석재은, 2002). 2008년에는 경로연금이 다시 기초노령연금으로 개편되면서 수급대상이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노인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노인 1인 기준 급여수준도 8.4만원으로 크게 인상되었다(보건복지부, 2015a).¹⁵⁾ 이와 같이 2014년 이전까지는 수급대상과 급여수준이 같이 확대되는 방향으로의 제도 확대가 이뤄진 것에 반해,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은 수급대상의 선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급여수준만 두 배 가량 인상되었다.

<표 1> 기초연금제도의 변화

	1991-1997년	1998-2007년	2008-2014년	2014년-현재
제도명	노령수당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기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일부 →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 전체	65세 이상 기초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	
수급률	3.4-7.8%	16-20%	57-67%	66-67%
월 급여수준	1만원(1991) 1.5만원(1992) 연령별 3-5만원(1995)	수급자: 연령별 4.5-5만, 차상위: 3.5만 (2002)	1인: 8.8만원, 부부: 14만원 (2009)	1인: 20만원, 부부: 32만원 (2014)

자료: 도재형(2005), 석재은(2002), 정경희 외(2016), 보건복지부(2015b)

15)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과 급여수준이 기존 경로연금에 비해 확대되면서, 2009년 노인교통수당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은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이 통합된 제도로 볼 수도 있다(정경희 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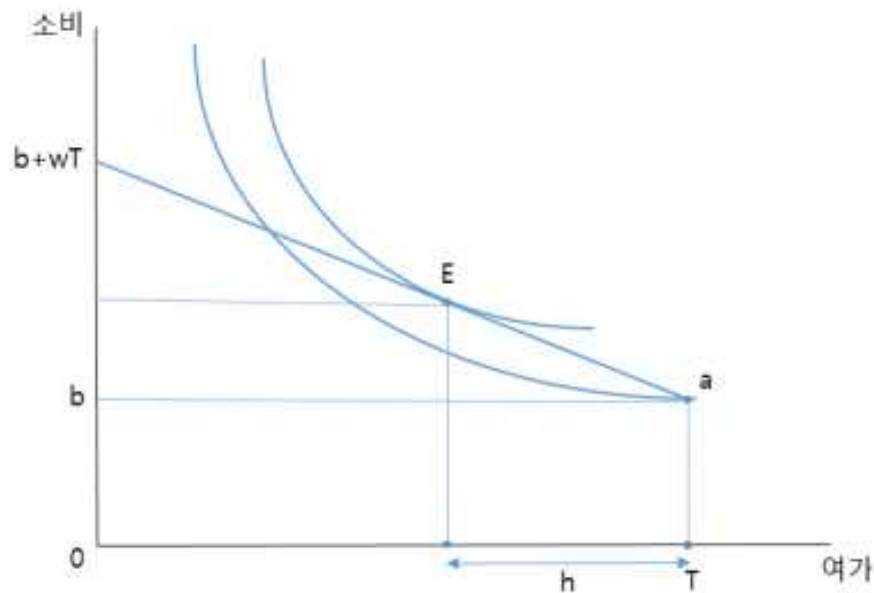
이 연구는 2014년 7월 시행된 제도 변화가 제공하는 준실험적(quasi-experimental) 환경에 주목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후를 단순 비교하는 방법으로도 공적 이전 급여의 확대가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경우, 외생적인 제도 변화 외의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게 유지된 조건에서 공적이전 급여만 2배 가량 높아지는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2. 기초연금제도 도입과 노동공급의 관계

노동경제학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개인의 노동공급을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으로 설명한다(Moen, Sweet, & Swisher, 2005; Ruhm, 1996; 남성일, 2017). 합리적인 개인은 자신의 효용(utility)을 극대화하기 원하며, 효용은 소비와 여가를 통해서 얻어진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선택은 두 가지 방향으로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는 노동소득의 증가로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효용이 증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시간의 일부를 노동에 할당하여 여가 시간의 감소로 인해 효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개인은 노동참여를 통한 소득의 증가와 여가를 통한 효용 사이에서 본인의 총효용이 가장 높아지는 지점을 선택하게 되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노동시장에 참여할지 여부와 참여한다면 얼마나 참여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노동공급의 선택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크게 개인의 생산성 요인과 비노동소득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력이나 숙련 수준이 높은 노동자는 높은 생산성에 맞게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므로, 같은 조건의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에 비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을 하지 않아도 획득할 수 있는 소득수준이 높은 개인은 노동소득이 없어도 일정 정도의 여가를 소비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인다.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b 는 비노동소득의 양을 의미하고, w 는 개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시장임금이다. a 와 $b+wt$ 를 이은 직선은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 정도에 따른 예산선이며, 모든 개인은 자신이 보유한 생산성과 비노동소득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예산선을 지닌다. 예산선 위의 점들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효용을 주는 지점을 노동시간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림 8〉 합리적 선택이론의 노동공급 모형



출처: 남성일(2017)

공적이전의 수급과 노동공급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생산성과 비노동소득의 두 가지 요인이 사용된다. 공적이전 급여를 수급하면 개인의 노동 외 소득(b)이 증가하게 되므로 수급자의 노동공급이 낮아지는 역할을 하며, 이를 소득효과라고 부른다. 또한, 공적이전제도의 급여수준이 노동소득의 정도에 따라 차감되는 형태를 가지는 경우, 시간당 노동소득의 양을 의미하는 임금률(w)에 영향을 미쳐 노동공급을 저해할 수 있는데, 이를 대체효과라 한다. 공공부조 제도는 수급자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모두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수급자의 노동동기 감소 여부가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구인회 외, 2010; 박상현, 김태일, 2011).

기초연금제도 역시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지니고 있다. 신청자가 65세 이상의 기준과 소득인정액 하위 70%의 기준을 충족하면 정해진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수급자격을 충족한 개인은 비노동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소득수준이 정해진 수급기준에 가까워질수록 급여수준이 일정 정도 차감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으며, 수급기준을 완전히 넘게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대체효과 역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제도는 다른 공공부조 제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소득공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노동공급의 감소 정도 역시 비교적 낮을 수 있다(Lee et al., 2017).

공공부조 제도로써 기초연금제도가 지니고 있는 노동공급의 감소 효과와 별개로, 2014년 7월의

제도 확대는 대체효과를 그대로 두고 소득효과만 확대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특징이 있다. 기초연금 수급의 대체효과는 개인의 생산성이 반영된 시간당 임금률의 변화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의 전환은 수급대상의 선정 기준을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을 유지하였고, 1인당 월 48만원의 노동소득 공제금액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제도로의 변화는 수급자에게 있어서 비노동소득의 금액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동기가 일정 부분 감소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제도 도입 전후의 노동공급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급여수준의 인상이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3. 노인의 생활시간 구성

이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으로 노인의 노동이 감소하였다면, 그러한 감소가 다른 범주의 생활시간 변화와 어떠한 관계를 보였는지 살펴본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소수의 연구가 기초연금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다룬 바 있지만, 이를 전체 생활시간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의 생활시간 실태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이나 노동시간을 다룬 선행연구에 의하면, 서구의 노인이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을 전후로 노동시간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노인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고(이승호, 2013; 이철희, 2014), 노동시간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박미희, 변금선, 2013).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노동시간은 다른 범주의 생활시간 증가로 이어지는데, 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일부 가사와 돌봄 등의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가사와 돌봄은 여성보다는 남성 노인에게서 증가 정도가 두드러지며(박미희, 변금선, 2013), 여가의 경우에는 남녀 노인 모두 사회참여 등의 적극적 여가보다는 소극적 여가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진욱, 2006; 현재은, 권혁주, 2012). 그 결과 노인의 생활시간은 비노인에 비해 노동시간의 비중이 적고, 소극적 여가와 가사 및 돌봄 시간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기초연금의 확대에 의한 생활시간의 변화 역시 가사나 돌봄과 같은 가족 유지 시간과 소극적 여가 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것 같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연령의 증가로 인한 노동시간의 감소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단순 기술통계를 이용한 연령

별 추이 변화 분석에서는, 노동시간 감소로 인한 영향과 고령화의 영향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 도입의 단기적인 효과에 주목하므로, 분석결과는 고령화의 영향을 최소화한 조건에서 노동공급의 변화와 생활시간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연령에 따른 생활시간 변화 추이와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생활시간조사는 응답자가 자신의 행동을 10분 단위로 직접 시간일지에 기입하는 방식(after-coded diary)으로 조사되며, 개인마다 정해진 요일에 2일씩(1인당 24시간*2일) 일지를 작성한다. 응답자는 사전에 분류되어 있는 9개 범주 139가지의 행동 중에서 실제 자신의 행동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시간일지에 기입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에 비해 개인의 일상 생활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전국 대표성을 지니는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 2014년에 4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생활시간조사는 반복횡단조사(repeated cross-sectional data)로 사용되지만, 2009년 조사부터는 여러 시점에 걸쳐서 조사를 진행한 후 이를 취합하여 공개하고 있다. 2014년에는 7월과 9월 및 12월, 세 시점에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점 차이를 이용한다. 즉, 기초연금제도의 인상된 급여가 지급되기 직전인 7월과,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9월 및 12월의 노인 노동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도 도입이 노인 노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제도 도입 전후의 비교 시점 간 간격이 짧아서, 공적이전 급여가 인상된 제도적인 변화를 제외하면, 응답자의 고령화로 인한 영향, 농업 감소나 파트타임의 증가와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측정 시점이 모두 다른 계절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분석에 포함하는 대상은 60-75세의 남성 중고령자 1,960명이며, 1인당 2일씩 시간일지를 작성하였으므로, 3,960개의 시간일지가 포함된다. 연령 기준을 7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연구의 주된

종속변수가 노동참여 여부 및 노동시간이기 때문이다. 고령 노인의 경우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더러, 일을 하는 이유에 있어서도 다른 연령집단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연령의 하한선을 60세로 정한 것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 연령과 가능한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연령집단을 선정하기 위한 결정이다. 분석대상을 남성 고령자로 제한한 것은,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메커니즘이 상이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한 것이다(최승현, 2006).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가족과 관련된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활시간조사는 가족 특성과 관련하여 제한된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누락 변수로 인한 편의를 줄이기 위해, 분석대상을 60-75세의 남성 고령자 집단으로 제한하였다.

2. 분석방법

이 연구의 분석은 준실험설계에 기초하여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는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s) 방법을 수정, 확장한 삼중차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중차이 방법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처치집단(treatment group)과 대상이 되지 않는 비교집단(control group)을 설정하고, 두 집단 간 제도 도입 전후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 적용하면,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낮은 기초연금의 수급집단이 처치집단이 되고, 65세 이상의 고소득 노인이 비수급집단이 비교집단이 된다. 비교집단에서 제도 변화 전후의 두 시점 간 변화는 처치집단에서 제도의 변화가 없었을 경우를 보여주는 가상적인(counterfactual) 변화로 간주되는데, 이는 제도의 도입이 없었다면 두 집단이 동일한 변화를 보였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인한다(Blundel & Dias, 2009; 이승호, 변금선, 신유미, 2016). 그러나 경제력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두 집단에서 노동시장 참여나 일상생활에 동일한 변화 추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Lee et al., 2017). 이처럼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변화 추이가 동일하다고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두 집단 간 변화 추이의 차이를 제거해야만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분석에서 고려하는 차원을 하나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중차이 모형을 수정한다. 기초연금 수급여부의 차원과 제도 확대 시점 전후의 차원에 더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직전의 연령인 65세 전후의 차원을 추가한다. 60대 초반의 연령대를 저소득 집단과 고소득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 두 집단에서 제도 도입 전후에 노동 및 생활시간의

변화 추이가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확인한 후, 그러한 집단 간 차이를 65세 이후 연령대에서의 처치, 비교집단에서의 전후 차이에서 차분하는 방식을 취한다. 기초연금 도입의 효과는 단순삼중차이와 회귀모형을 이용한 삼중차이의 두 가지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회귀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Y_{igty} = \alpha + \gamma Ben_g + \tau Aft_t + \theta Yr_y + \delta_1(Ben_g \cdot Aft_t) + \delta_2(Ben_g \cdot Yr_y) + \delta_3(Yr_y \cdot Aft_t) + \delta_4(Ben_g \cdot Aft_t \cdot Yr_y) + X'_{igty}\beta + \varepsilon_{igty}$$

여기서 하첨자 i 는 개별 응답자를, t 는 조사 시기를, y 는 연령집단을 의미한다. Ben 은 개별 가구가 처치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Aft 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이전 혹은 이후인지 여부를, Yr 은 기초연금의 수급대상 연령인지 여부를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변수는 $Ben_g \cdot Aft_t \cdot Yr_y$ 이며, 이 변수의 회귀계수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삼중차이 결과를 보여준다. X'_{igty} 는 통제변수들을 의미하며, 응답자의 개인 특성(건강, 교육수준, 결혼지위, 가구주 여부 등)과 가구 특성(자가 여부, 거주지역) 등으로 구성한다. 모든 분석에는 생활시간조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가중치를 적용한다.

덧붙여, 연구의 결과변수인 노동 및 생활시간은 동일한 개인의 24시간에서 할당된 값이기 때문에 결과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노동, 가사, 여가시간 등을 결과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각각 분석하는 경우, 개별 모형의 오차항들 간 상관관계로 인해, 가설검정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Kimmel & Connelly, 2007; 변금선, 허용창,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회귀모형의 오차항 간 상관관계를 허용하는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회귀분석을 적용한다.

3. 변수의 측정

연구의 종속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변수는 응답자의 노동시장 참여여부이며, 이 변수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거나, 휴가 또는 일시 휴직 중인 경우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으로 측정한다. 두 번째 변수는 응답자의 노동 시간이며, 시간일지를 작성한 하루 중 고용된 일 또는 자영업과 관련하여 보낸 시간의 총합으로 측정한다. 세 번째 종속변수는 응답자의 노동 외 생활시간이다. 노동 외의 생활시간은 4가지 범주를

구분하는데, 가정관리(음식, 청소, 쇼핑 등)와 돌봄(동거 및 비동거 가족에 대한 돌봄)에 보낸 시간을 가사시간으로, 학습이나 사회참여, 봉사, 교제 및 문화생활에 보낸 시간을 적극적 여가시간으로, 실시간 방송 보기, 흡연, 아무 것도 안하는 시간의 합을 소극적 여가시간으로, 수면이나 식사, 세면 등의 시간을 개인유지 시간으로 측정한다.

독립변수는 삼중차이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앞서 분석방법에서 살펴봤듯이, 이 연구의 처치집단은 65세 이상인 연령집단에 속하면서, 저소득인 집단이며, 처치시기는 2014년 7월 이후를 의미한다. 첫 번째 독립변수는 연령더미이며, 응답자가 65세 이상이면 1, 아니면 0으로 측정한다. 두 번째 독립변수는 소득더미인데, 기초연금제도의 설계를 고려하여 노인 부부의 개인 월소득을 부 부단위로 합산한 후,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계산하여, 부부의 합산소득이 70% 이하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으로 측정한다.¹⁶⁾ 세 번째 독립변수는 시기더미이며, 7월 조사에 응답했으면 0, 9월이나 12월의 조사에 응답했으면 1로 측정한다.

그 외에 통제변수로 노동공급 및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과 가구 특성들을 포함한다. 개인 특성은 건강(건강이 취약하면 1, 아니면 0), 교육수준(초등학교 이하(ref)/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결혼지위(배우자가 있으면 1, 없으면 0), 가구주 여부(가구주면 1, 아니면 0) 변수로 구성하고, 가구 특성은 자가 여부(자가이면 1, 아니면 0), 거주지역(대도시 거주면 1, 아니면 0) 변수를 포함한다. 추가로 시간일지가 평일에 작성되었으면 1, 주말에 작성되었으면 0으로 측정하는 조사요일 더미도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IV. 분석결과

1. 분석대상의 특성

다음의 <표 2>는 분석대상을 연령과 소득수준으로 구분한 집단별 특성을 보여준다. 이 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저소득 노인과 고소득 노인의 특성 차이이다. 저소득 노인 집단은 고소득 노인 집단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건강이 취약하며, 가구주인 비율이 낮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16)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개인의 소득만으로 추정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개인의 소득을 구간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구간별 중간값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하였다.

많았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이 속한 가구는 고소득 노인의 가구에 비해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았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의 효과를 단순 이중차이의 방법으로 추정할 경우, 처치집단(저소득 노인)과 비교집단(고소득 노인)의 다양한 특성 차이로 인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두 집단의 종속변수가 비슷한 양상으로 변할 것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표 2〉 표본의 특성

(단위: %)

	60-64세		65-75세	
	저소득	고소득	저소득	고소득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2.9	10.8	39.0	19.2
중학교	26.9	19.7	23.1	20.8
고등학교	40.4	38.3	30.0	33.1
대학이상	9.9	31.2	8.0	27.0
건강이 취약한 편	16.1	7.1	23.9	10.5
가구주	85.2	91.6	88.2	95.3
배우자 있음	66.3	98.9	75.6	99.0
자가 거주	66.0	80.9	76.5	85.5
대도시 거주	49.5	45.1	43.7	41.5
평일 작성	66.2	70.4	68.5	72.4
N	422	1,026	1,352	1,160

이에 본 연구에서는 60-64세 연령집단을 65세 이상 노인 집단과 동일한 소득기준을 이용하여 저소득 및 고소득 집단으로 구분하고, 두 집단의 종속변수 변화 정도를 차분하는 방식으로 노인 집단 간 소득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편의를 제거한다. 물론, 60-64세 집단은 65-75세 집단에 비해 학력 수준이 높고, 건강하며, 가구주인 비율이 낮고,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낮다. 가구 특성에서도 자가 비율이 낮고, 대도시 거주 비율이 높다는 차이가 확인된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저소득 집단이 고소득 집단에 비해 학력 수준이 낮고, 건강이 취약하며, 가구주 비율이 낮고,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으며, 자가 비율이 낮고, 대도시 비율이 높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65세 이상 노인 집단에서 소득집단에 따른 차이와 동일한 양상이다. 60-64세 연령집단이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집단에서의 소득에 따른 차이가 제도 변화가 없었을 경우에 65세 이상 집단에서 관측될 수 있는 소득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2. 단순 삼중차이 결과

다음의 <표 3>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전후 각 집단의 종속변수 변화 정도를 정리한 것이다. 단순 삼중차이 분석은 각 하위집단별 종속변수의 평균값을 확인할 수 있고, 집단 간 종속변수의 차이를 제시하여, 분석결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여기서는 고용률의 변화에 대한 단순 삼중차이 분석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다른 결과변수들의 결과는 비교적 간략하게 살펴본다.

〈표 3〉 단순 삼중차이 결과

고용률 (단위: %)				
노인		도입 전	도입 후	D/DD
	저소득	38.94	37.85	-1.09
	고소득	48.13	55.66	7.53
	D/DD	-9.19	-17.81	-8.62
비노인	저소득	61.30	56.82	-4.48
	고소득	75.95	78.97	3.02
	D/DD	-14.65	-22.15	-7.50
DDD		-1.12		
노동시간 (단위: 분/하루)				
노인	저소득	120.22	112.08	-8.14
	고소득	158.20	176.38	18.18
	D/DD	-37.98	-64.30	-26.32
비노인	저소득	193.47	205.91	12.44
	고소득	306.93	267.17	-39.76
	D/DD	-113.46	-61.26	52.20
DDD		-78.52		
가사시간 (단위: 분/하루)				
노인	저소득	70.95	81.29	10.34
	고소득	58.51	55.78	-2.73
	D/DD	12.44	25.51	13.07
비노인	저소득	58.10	76.29	18.19
	고소득	42.22	50.30	8.08
	D/DD	15.88	25.99	10.11
DDD		2.96		
적극적 여가시간 (단위: 분/하루)				
노인	저소득	150.77	152.26	1.49
	고소득	155.97	156.39	0.42
	D/DD	-5.20	-4.13	1.07
비노인	저소득	140.13	124.73	-15.40
	고소득	99.90	127.04	27.14
	D/DD	40.23	-2.31	-42.54
DDD		43.61		
소극적 여가시간 (단위: 분/하루)				
노인	저소득	293.93	293.27	-0.66
	고소득	266.96	258.38	-8.58
	D/DD	26.97	34.89	7.92
비노인	저소득	264.01	239.05	-24.96
	고소득	201.95	192.98	-8.97
	D/DD	62.06	46.07	-15.99
DDD		23.91		
개인유지시간 (단위: 분/하루)				
노인	저소득	708.58	708.64	0.06
	고소득	685.54	687.71	2.17
	D/DD	23.04	20.93	-2.11
비노인	저소득	690.16	694.81	4.65
	고소득	671.21	673.44	2.23
	D/DD	18.95	21.37	2.42
DDD		-4.53		

집단 간 고용률의 차이를 보면, 노인 집단의 고용률이 비노인 집단보다 낮았고, 저소득 집단의 고용률이 고소득 집단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주요 수급대상인 저소득 노인은 분석대상의 모든 하위집단 중에서 가장 고용률이 낮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기초연금의 도입 이전에 저소득 노인의 고용률은 38.9%였으며, 제도 도입 이후에는 고용률이 37.9%가 되어서 약 1.1%p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에 고소득 노인의 고용률은 48.1%에서 55.7%로 약 7.5%p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중차이 방법으로 추정하면,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저소득 노인의 고용률이 8.6%p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저소득 노인과 고소득 노인 집단은 상당히 다른 특성들을 지니고 있으며, 생활시간조사에서 관측되지 않은 특성까지 고려하면, 집단 간 차이는 보이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예컨대, 저소득 노인은 계약직이나 파트타임과 같은 취약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이 일자리들에서는 기초연금의 도입과 무관하게 가을과 겨울의 실업률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 집단의 특성 차이로 인한 편의를 고려하기 위해, 동일한 이중차이 분석을 60-64세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저소득 비노인은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이 없었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고소득 비노인에 비해 고용률이 7.5%p 더 감소하였다. 따라서 저소득 노인 집단의 고용률 감소 8.6%p 중에서 7.5%p는 기초연금과 무관한 집단 간 소득격차와 관련한 특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처지집단의 고용률을 1.1%p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집단의 평균 노동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저소득 노인의 노동시간은 고소득 노인에 비해 26.3분 감소하였다. 그런데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을 받지 않은 비노인 집단에서는 저소득 집단이 고소득 집단에 비해 노동시간이 52.2분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도입은 수급대상 노인의 노동시간을 78.5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동일한 논리로 기초연금의 도입이 다른 범주별 생활시간에 미친 영향도 추정할 수 있다. 가사와 돌봄 활동을 포함하는 가사시간은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의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적극적 및 소득적 여가시간의 경우에는 각각 43.6분과 23.9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활동들로 구성된 개인유지시간은 4.5분 정도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단순 삼중차이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저소득 노인 집단의 노동공급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노동공급의 감소는 고용률과 노동시간의 두 측면 모두에서 관찰되었지만, 고용률의 감소에 비해 노동시간의 감소 정도가 훨씬 두드러졌다. 둘째,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감소한 노동시간은 주로 여가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소극적 여가보다 적극적 여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회귀분석 결과

단순 삼중차이 분석은 각 집단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적, 계절적 요인을 통제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구 특성의 집단 간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삼중차이를 적용한 다중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노인의 노동 및 생활시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다.

〈표 4〉 기초연금의 도입이 수급노인의 취업확률에 미친 영향 (OLS 회귀분석)

DV: 노동시장 참여여부	모형1		모형2	
	b	robust SE ¹⁾	b	robust SE ¹⁾
저소득	-.147	.060 *	-.098	.059 †
도입 후	.030	.035	.055	.034
노인	-.278	.043 ***	-.270	.042 ***
저소득×도입 후	-.075	.067	-.110	.065 †
도입 후×노인	.045	.049	.008	.047
노인×저소득	.055	.074	.010	.072
저소득×노인×도입 후	-.011	.083	.039	.081
중학교			-.038	.022 †
고등학교			-.124	.020 ***
대학 이상			-.190	.024 ***
건강 취약			-.144	.021 ***
가구주			.223	.026 ***
배우자 있음			.063	.025 *
자가 거주			.021	.019
대도시			-.064	.015 ***
평일			.035	.016 *
상수	.759	.030 ***	.584	.050 ***
R ²	.101		.154	
F	63.55 ***		44.74 ***	
N	3960			

주: 1) 개인ID를 기준으로 한 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임.

***: p<.001, **: p<.01, *: p<.05, †: p<.10

위의 〈표 4〉는 응답자의 노동시장 참여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OLS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 분석의 종속변수는 응답자의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이분변수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로짓이나 프로빗과 같은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OLS 방법을 이용하는 선형확률모형

(linear probability model: LPM)을 적용하였다. 종속변수의 발생확률이 0.2-0.8 구간에서는 로짓 모형과 LPM의 분포가 매우 유사하고, LPM을 적용한 결과 역시 불편 추정치라는 선행연구의 견해를 참고하였다(남재량, 박기성, 2010; 박미희, 2017). 그밖에, LPM의 회귀계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표는 두 가지 모형의 분석결과를 보여주는데, 모형1은 앞서 살펴본 단순 삼중차이의 분석을 회귀분석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앞에서의 결과와 같이,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수급노인 집단의 고용률이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2의 회귀분석 결과는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조건에서 기초연금의 도입이 수급노인 집단의 고용률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분석결과, 단순 삼중차이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의 도입이 수급노인 집단의 고용률 변화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이는 공적이전 급여의 수급이 수급자의 노동공급을 낮출 수 있다는 전통적인 노동경제학의 견해에 반하는 결과라 주목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공공부조의 수급이 노동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보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구인회 외, 2010; 박상현, 김태일, 2011), 여타 공공부조 제도와 달리 기초연금제도가 지니고 있는 특성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통제변수들이 고령층의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교육수준의 영향은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초등학교 이하 졸업 집단에 비해 취업확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 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서구와 달리, 개인의 생산성보다는 생애과정에서 축적한 재산 정도와 같은 노후의 준비 정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건강수준은 서구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노인일수록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는 비가구주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자가 거주 여부는 취업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다수의 노인이 자가에 거주하고 있어서 변수의 변량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층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층에 비해 취업률이 낮았고, 평일일수록 더 많은 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의 <표 5>는 기초연금의 도입이 수급노인의 생활시간에 미친 영향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생활시간 간 상관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SUR 회귀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두 가지 모

17) 다만 단순 삼중차이에서의 결과와 달리, 회귀계수가 정(+)적인 부호로 바뀌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집단 간 특성의 차이를 통제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형의 결과를 포함한 <표 4>와 달리 통제변수를 포함한 분석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생활시간 범주별로 구분한 다섯 가지 모형이 모두 통계적으로 적합하였고, 독립성 검증 결과 각 모형의 잔차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여 SUR을 적용한 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승호, 박미진, 2017). 여기서는 제도 도입의 효과를 보여주는 삼중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5〉 기초연금의 도입이 수급노인의 생활시간에 미친 영향 (SUR 회귀분석)

	노동시간		가사시간		적극적 여가시간		소극적 여가시간		개인유지시간	
	b	robust SE	b	robust SE	b	robust SE	b	robust SE	b	robust SE
저소득	-109.744	27.084 ***	5.731	10.579	49.991	14.955 ***	60.978	18.752 ***	11.940	13.824
도입 후	-33.569	15.577 *	6.743	6.084	24.825	8.601 **	-9.996	10.784	1.470	7.950
노인	-147.032	19.549 ***	15.661	7.636 *	60.284	10.794 ***	63.607	13.535 ***	10.233	9.978
저소득×도입 후	46.405	29.885	6.418	11.673	-46.392	16.501 **	-10.322	20.691	11.220	15.253
도입 후×노인	49.265	21.912 *	-9.025	8.559	-26.213	12.099 *	2.357	15.170	2.825	11.184
노인×저소득	69.435	33.306 *	-1.067	13.010	-50.133	18.390 **	-32.491	23.059	9.481	16.999
저소득×노인×도입 후	-66.998	37.169 †	5.816	14.519	51.875	20.523 *	13.532	25.734	-18.253	18.971
중학교	19.213	10.161 †	6.433	3.969	1.692	5.610	-19.498	7.035 **	-8.781	5.186 †
고등학교	-21.717	9.394 *	6.181	3.669 †	24.437	5.187 ***	-3.551	6.504	-6.523	4.795
대학 이상	-61.591	10.970 ***	10.315	4.285 *	42.717	6.057 ***	14.022	7.595 †	-20.101	5.599 ***
건강 취약	-53.364	9.904 ***	-4.143	3.868	-28.063	5.468 ***	55.470	6.857 ***	53.980	5.055 ***
가구주	51.039	11.785 ***	-4.782	4.603	-13.940	6.507 *	-23.274	8.159 **	-17.600	6.015 **
배우자 있음	13.651	11.744	-48.117	4.587 ***	-14.294	6.485 *	22.274	8.131 **	31.978	5.994 ***
자가 거주	-23.263	8.686 **	6.898	3.393 *	20.566	4.796 ***	-6.138	6.014	0.879	4.433
대도시	-25.167	6.908 ***	2.564	2.699	11.032	3.815 **	-5.958	4.783	4.226	3.526
평일	69.381	7.324 ***	0.295	2.861	-32.291	4.044 ***	-26.384	5.071 ***	-19.382	3.738 ***
상수	250.535	23.229 ***	81.783	9.073 ***	108.763	12.826 ***	225.196	16.082 ***	674.012	11.856 ***
R ²	.130		.054		.068		.095		.064	
chi ²	589.24 ***		225.45 ***		288.82 ***		415.38 ***		272.76 ***	
독립성 ¹⁾	3398.651 ***									
N	3,960									

주: 1) Breusch-Pagan test of independence의 chi² 값을 의미함.

***: p<.001, **: p<.01, *: p<.05, †: p<.10

먼저, 기초연금의 도입이 수급노인의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제도 도입 이후 노동시간이 67.0분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영향은 $p < .10$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앞서 고용률의 변화와 같이 고려하면, 제도의 도입으로 일을 하는 노인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취업 노인의 평균 노동시간은 1시간 이상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범주별 생활시간에 미친 영향에서는 적극적 여가시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가 발견되었다. 노동시간의 감소로 확보된 67.0분의 시간 중 대부분인 51.9분이 적극적 여가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시간과 소극적 여가시간도 각각 5.8분과 13.5분 증가한 결과를 보였지만, 유의한 수준의 변화는 아니었다. 개인유지 시간은 단순 삼중차이에서와 같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도를 갖추지 못하였다.

통제변수의 영향을 고려한 회귀모형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인한 노동공급의 감소는 고용률이 아닌 취업노인의 노동시간 감소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감소한 노동시간의 상당 부분은 적극적 여가시간으로 전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이 연구는 2014년 7월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수급노인의 노동 및 생활시간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4년 생활시간조사의 조사 시점 차이를 이용하여 종단 자료를 구성하였고, 이중차이 방법을 확대한 삼중차이 방법을 적용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연금의 도입은 수급노인의 고용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취업 노인의 노동시간을 67.0분 정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감소한 노동시간은 가사나 소극적 여가,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보다는 적극적 여가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정책적인 차원에서 기초연금의 확대가 수급노인의 고용률을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노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연령까지 많은 시간을 일을 하면서도, 대다수의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동시에, 인구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생산연령대 인구규모의 비중이 감소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노인의 고용률을 현재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기초연금

의 확대가 그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둘째,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노동공급의 변화를 분석할 때, 고용률의 변화(extensive margins)와 노동시간의 변화(intensive margins)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공적이전의 수급과 노동공급의 관계를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여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공적이전 급여 중에서 특히 공공부조의 수급이 노동공급을 줄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고용률에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노동시간의 차원에서 노동공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셋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횡단조사로 설계된 자료의 조사설계 특성을 이용하여, 종단적 자료를 구성해 분석에 활용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종단 자료들이 많이 생산된 바 있지만, 생활시간조사는 5년을 주기로 하는 반복횡단자료의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단기적인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에는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함의와 함께,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분석자료의 한계에 유의해야 한다. 생활시간조사는 응답자의 소득수준을 구간 정보로 제시하고, 더욱이 재산 수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 중 하나인 기초연금의 수급여부 추정은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생활시간조사에서 제공하는 변수의 제한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통제변수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남성 고령층으로 분석대상을 제한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여성 고령층의 노동공급은 남성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전체 고령층을 대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기간이 2014년 7-12월로 제한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기초연금제도의 단기적 효과를 의미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이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인회, 임세희, 문혜진.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 이중차이 방법을 이용한 추정. 한국사회학, 44(1), 123-148.
- 남성일. 2017. 쉬운 노동경제학. 박영사.
- 남재량, 박기성. 2010.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연구. 노동정책연구, 10(4), 65-99.
- 김진옥. 2006. 한국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실증연구: 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 133-158.
- 도재형. 2005. 노령수당 지급 신청권과 노인복지사업지침의 효력: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누7727 판결. 강원법학, 20, 161-182.
- 박미희. 2017. OECD 국가의 청년 NEET 결정요인 연구: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사회정책의 조정효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미희, 변금선. 2013. 생애과정 전환기의 생활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5(3): 29-52.
- 박상현, 김태일.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 공급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 20(4), 277-307.
- 변금선, 허용창. 2014. 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 소득 가구의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6(2), 101-125.
- 보건복지부. 2015a. 2015 기초연금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5b. 통계로 본 2014년 기초연금.
- 석재은. 2002.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조화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사회보장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 자료집.
- 이승호. 2013. 한국 노인의 노동시장참여율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동시장구조와 사회보장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승호, 변금선, 신유미. 2016.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가 가족의 생활시간에 미친 영향: 삼중차이 방법의 적용. 한국사회정책, 23(1), 227-256.
- 이승호, 박미진. 2017.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퇴근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의 관계. 한국사회정책, 24(1), 117-151.
- 이철희. 2014. 한국 고령노동시장 성격에 대한 비교사적 접근. 이영훈 역. 2014. 한국형 시장경제체제, 7장,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경희, 강은나, 이윤경, 황남희, 양찬미. 2016.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은선, 박진화. 2010. 연금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이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 남성고령자와 여성고령자, 1990년대 중반 이전과 이후의 비교. 사회복지정책, 3, 237-259.
- 지은정. 2008.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연구: 노후빈곤노동가설 및 숙련편향기술진보

- 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0(3), 31-58.
- 최승현. 2006. 맞벌이가구의 은퇴행태에 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29(1), 129-152.
- 현재은, 권혁주. 2012.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대한 시간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1(2), 277-300.
- Amuedo-Dorantes, C., & Juarez, L. 2015. Old-age government transfers and the crowding out of private gifts: the 70 and above program for the rural elderly in Mexico. Southern Economic Journal, 81, 782-802.
- Blundell, R., & Dias, M. C. 2009. Alternative approaches to evaluation in empirical economics. Journal of Human Resources, 44, 565-640.
- Duval, R. 2003. The Retirement Effects of Old-Age Pension and Early Retirement scheme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370.
- Gasparini, L., J. Alejo, F. Haimovich, S. Olivieri, & L. Tornarolli. 2007. Poverty among the elderly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Background paper for the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no. 55). CEDLAS.
- Gruber, J. & D. Wise. 1999. Social Security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ensen, R. T. 2003. Do private transfers 'displace' the benefits of public transfers? Evidence from South Afric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89-112.
- Kakwani, N., & K. Subbarao. 2007. Poverty among the elderly in sub-Saharan Africa and the role of social pension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3, 987-1008.
- Kimmel, J. & Connelly, R. 2007. Mothers' time choices caregiving, leisure, home production, and paid work. Journal of Human Resources. 42(3). 643-681.
- Lee, S., Ku, I., & Shon, B. 2017. The Effects of old-age public transfer on the well-being of older adults: The case of social pension in South Korea.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Online Publication.
- Moen, P., Sweet, S., & Swisher, R. 2005. Embedded career clocks: The case of retirement planning.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9, 237-265.
- Pampel, F. C., & Weiss, J. A. 1983. Economic development, pension policies, and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aged males: A cross-national, longitudinal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2), 350-372.
- Ruhm, C. J. 1996.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behavior during late middle ag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1b(1), S11-S17.